

목 차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2014. 5.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1
1.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2
2. 추진경과	3
3. 재허가 심사 계획	4
4. 심사항목 및 배점	8
5. 재허가 여부 결정	10
II. 재허가 신청공고	11
III. 시청자 의견 청취	29
1.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30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32
IV.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42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43
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45
3. 심사평가 방식	47
4.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49
V.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9
1.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60
2.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61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61
4.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64
5.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66
6.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85

VII. 방송국 기술심사 93

1.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94
2. 주요 심사 내용	95
3. 심사결과	97

VIII.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98

1.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2013.12.9) 의결내용	99
1.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2013.12.27) 의결내용	107

VIII.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111

IX.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14

1.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3.5.27)	115
2.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3.12.9)	123
3.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3.12.27)	136

X. 보도자료 141

부록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156

I.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1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o 2013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 총 38개사, 262개 방송국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구분	매체 구분				합계
	TV	FM	표준FM	AM	
한국방송공사	32	18	31	27	108
(주)문화방송	1	1	1	1	4
지역MBC 18개사	19	19	19	19	76
(주)SBS	1	1	1	1	4
(주)KNN	1	1	-	-	2
(주)대구방송	1	1	-	-	2
(주)광주방송	1	1	-	-	2
(주)대전방송	1	1	-	-	2
(주)전주방송	1	1	-	-	2
(주)청주방송	1	1	-	-	2
(주)울산방송	1	1	-	-	2
(주)G1	1	1	-	-	2
(주)제주방송	1	1	-	-	2
(주)경기방송	-	1	-	-	1
(재)불교방송	-	7	-	-	7
(재)평화방송	-	5	-	-	5
(재)기독교방송	-	11	5	5	21
(재)원음방송	-	5	-	-	5
(재)극동방송	-	8	1	2	11
(주)YTN라디오	-	1	-	-	1
OBS경인TV(주)	1	-	-	-	1
합 계	63	86	58	55	262

2 추진 경과

- 2013. 5. 27. '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 2013. 5. 31. 재허가 신청 안내 및 공고
- 2013. 6. 5. 재허가 신청관련 사업자 설명회
- 2013. 6. 30. 재허가 신청서 접수
- 2013. 8. 5.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 관보, 홈페이지(방통위·방송사·광역자치단체) 게재 및 방송사 공지 등
 - ※ 8. 5 ~ 8. 30, 총 100건 접수
- 2013. 8.~10. 재허가 대상 38개 사업자 현장 조사(8.29~10.4)
 - ※ 심사기간 중 38개 사업자 의견청취(총 6일, 11.6~11.8, 11.11~11.12, 11.18)
- 2013. 12. 9. (주)OBS경인TV 재허가 관련 의견청취
- 2013. 12. 9. '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 ※ KBS, (주)문화방송, (주)SBS 등 37개사 261개 방송국(주)OBS경인TV 제외
- 2013. 12. 27. (주)OBS경인TV 조건부재허가 의결

3 재허가 심사 계획

- 심사 기본방향
 - 가.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 및 시청자 권리 증진
 - 방송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 운영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심사시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실현 여부 중점 심사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실적 등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심사 평가에 반영
 - 나.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및 절차 합리화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의 대응 및 상생방안을 평가 기준에 반영·평가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적시성 확보
 -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회 증원, 평가단위 개선 등 심사절차 합리화
 - 다. 실질적 심사 강화를 통한 재허가 제도 실효성 확보
 -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 등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심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제출자료 검증 등 실질심사 강화
 - 사업계획 실현 능력 및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최대주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를 실시, 심사평가에 반영

□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가. 목 적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나.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구성원칙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 ·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② 구성방안(13인)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 · 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 · 회계 분야(2)	관련학과 교수·종사자, 회계사
	기술 분야(2)	관련학과 교수 · 종사자 또는 연구원
	시청자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기술 분야 심사위원 1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 의뢰

③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

구분	세부내용
위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이나 구성 주주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100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이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사의 임 · 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과 신청법인의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사의 자문 ·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다. 심사위원회 운영

① 기본방향

- 재허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허가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② 심사위원회의 직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및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의견제시 등

③ 의견청취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불가피한 경우 방통위(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④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지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 : 방송평가, 시정명령 회수 등에 따른 평가점수로 반영
- 비계량 :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심사항목별로 5등급 척도로 평가)

구분	등급	내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2	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3	미	보통	해당 배점의 60%
4	양	미흡	해당 배점의 40%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 비계량항목 심사 평가점수 집계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제외

※ 다만,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1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 (평가방식) 심사평가는 <방송사업자> 단위로 하며, 방송평가·행정처분·편성 등 채널별 특성이 반영되는 심사항목은 방송국 단위로 평가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평가유예)에 따라 방송평가 결과가 없는 방송국의 경우, 재허가 심사평가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4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기준 원칙

가. 공익성·시청자 보호 중점 심사

-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심사항목을 최대배점 항목으로 유지(총 1,000점 중 150점)하고, 시청자 보호 중요성 증가에 따라 시청자 권리 보호 심사항목 배점 강화(75점 → 85점)

나. 채널 특성을 고려한 심사평가

-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인한 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영·민영, 종합·전문편성사업자에 대한 평가요소를 차별 적용

다. 중복평가 요소 개선

- 방송평가가 운영실적 위주의 평가임을 고려하고, 재허가 유효기간이 연장(3년→5년) 됨에 따라 실적보다는 향후 계획을 중점 평가
- 과거 재허가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과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심사

라. 지상파방송의 미래 대응전략 마련 및 상생발전 유도

- 방송통신 융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서비스 다양화, 신기술 개발 등 향후 대응 전략 및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고,
- 방송사업자간 이해관계 증가에 따른 중소방송 상생을 위한 노력 등을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으로 평가

□ '13년도 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하되, 심사 기본원칙에 따라 배점 조정
- 재허가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13년도 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심사항목	배 점	방송법 관련조항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제17조제3항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점	제10조제1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점	제10조제1항
4. 경영의 적정성	50점	제10조제1항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점	제10조제1항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7. 시청자의 권리 보호	85점	제17조제3항
8.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점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점	제17조제3항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①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필요시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② 재허가 조건 등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5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시청자 권리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

II. 재허가 신청관련 공고

□ 재허가 대상

- o 2013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황>

구 분	방송 사업자
TV·라디오 (30개사)	·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18개 지역MBC, 9개 지역민방
TV (1개사)	· OBS경인TV(주)
라디오 (7개사)	·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기독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주)경기방송, (주)YTN라디오

□ 재허가 신청 서류 제출

- o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2013. 7. 1. 月)
-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 o 제출처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로)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o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 담당(02-2110-1421, openkey@kcc.go.kr)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 분야(2)	관련학과 교수·종사자, 회계사
	기술 분야(2)	관련학과 교수·종사자 또는 연구원
	시청자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점
4. 경영의 적정성	50점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점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85점
8.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점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점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계	1,000점

□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추진일정

- 2013년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 2013년 7월~8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미래부) 등
- 2013년 9월~10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3년 11월중 재허가 의결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붙임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붙임)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대상 방송국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재)극동방송	극동AM방송국	AM	2013-12-31
2	(재)극동방송	극동제주AM방송국	AM	2013-12-31
3	(재)극동방송	극동대전FM방송국	FM	2013-12-31
4	(재)극동방송	극동창원FM방송국	FM	2013-12-31
5	(재)극동방송	극동강릉FM방송국	FM	2013-12-31
6	(재)극동방송	극동포항FM방송국	FM	2013-12-31
7	(재)극동방송	극동표준FM방송국	FM	2013-12-31
8	(재)극동방송	극동목포FM방송국	FM	2013-12-31
9	(재)극동방송	극동울산FM방송국	FM	2013-12-31
10	(재)극동방송	극동부산FM방송국	FM	2013-12-31
11	(재)극동방송	극동대구FM방송국	FM	2013-12-31
12	(재)기독교방송	CBS AM방송국	AM	2013-12-31
13	(재)기독교방송	CBS부산AM방송국	AM	2013-12-31
14	(재)기독교방송	CBS대구AM방송국	AM	2013-12-31
15	(재)기독교방송	CBS광주AM방송국	AM	2013-12-31
16	(재)기독교방송	CBS전주AM방송국	AM	2013-12-31
17	(재)기독교방송	CBS청주FM방송국	FM	2013-12-31
18	(재)기독교방송	CBS춘천FM방송국	F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9	(재)기독교방송	CBS FM방송국	FM	2013-12-31
20	(재)기독교방송	CBS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1	(재)기독교방송	CBS대전FM방송국	FM	2013-12-31
22	(재)기독교방송	CBS부산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3	(재)기독교방송	CBS대구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4	(재)기독교방송	CBS광주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5	(재)기독교방송	CBS강릉FM방송국	FM	2013-12-31
26	(재)기독교방송	CBS제주FM방송국	FM	2013-12-31
27	(재)기독교방송	CBS마산FM방송국	FM	2013-12-31
28	(재)기독교방송	CBS포항FM방송국	FM	2013-12-31
29	(재)기독교방송	CBS전주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30	(재)기독교방송	CBS순천FM방송국	FM	2013-12-31
31	(재)기독교방송	CBS울산FM방송국	FM	2013-12-31
32	(재)기독교방송	CBS부산FM방송국	FM	2013-12-31
33	(재)불교방송	불교 FM방송국	FM	2013-12-31
34	(재)불교방송	불교부산FM방송국	FM	2013-12-31
35	(재)불교방송	불교광주FM방송국	FM	2013-12-31
36	(재)불교방송	불교대구FM방송국	FM	2013-12-31
37	(재)불교방송	불교청주FM방송국	FM	2013-12-31
38	(재)불교방송	불교춘천FM방송국	F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39	(재)불교방송	불교울산FM방송국	FM	2013-12-31
40	(재)원음방송	원음익산FM방송국	FM	2013-12-31
41	(재)원음방송	원음서울FM방송국	FM	2013-12-31
42	(재)원음방송	원음광주FM방송국	FM	2013-12-31
43	(재)원음방송	원음대구FM방송국	FM	2013-12-31
44	(재)원음방송	원음부산FM방송국	FM	2013-12-31
45	(재)평화방송	평화 FM방송국	FM	2013-12-31
46	(재)평화방송	평화광주FM방송국	FM	2013-12-31
47	(재)평화방송	평화대구FM방송국	FM	2013-12-31
48	(재)평화방송	평화부산FM방송국	FM	2013-12-31
49	(재)평화방송	평화대전FM방송국	FM	2013-12-31
50	(주)경기방송	경기FM방송국	FM	2013-12-31
51	(주)광주방송	KBC FM방송국	FM	2013-12-31
52	(주)광주방송	KBC DTV방송국	TV	2013-12-31
53	(주)대구방송	TBC FM방송국	FM	2013-12-31
54	(주)대구방송	TBC DTV방송국	TV	2013-12-31
55	(주)대전방송	TJB FM방송국	FM	2013-12-31
56	(주)대전방송	TJB DTV방송국	TV	2013-12-31
57	(주)문화방송	MBC AM방송국	AM	2013-12-31
58	(주)문화방송	MBC FM방송국	F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59	(주)문화방송	MBC표준FM방송국	FM	2013-12-31
60	(주)문화방송	MBC DTV방송국	TV	2013-12-31
61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진주AM방송국	AM	2013-12-31
62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창원AM방송국	AM	2013-12-31
63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창원FM방송국	FM	2013-12-31
64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진주FM방송국	FM	2013-12-31
65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진주 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66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창원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67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창원DTV방송국	TV	2013-12-31
68	(주)엠비씨경남	MBC경남진주DTV방송국	TV	2013-12-31
69	(주)울산방송	UBC FM방송국	FM	2013-12-31
70	(주)울산방송	UBC DTV방송국	TV	2013-12-31
71	(주)전주방송	JTV FM방송국	FM	2013-12-31
72	(주)전주방송	JTV DTV방송국	TV	2013-12-31
73	(주)제주방송	JIBS FM방송국	FM	2013-12-31
74	(주)제주방송	JIBS DTV방송국	TV	2013-12-31
75	(주)지원	G1 FM방송국	FM	2013-12-31
76	(주)지원	G1 DTV방송국	TV	2013-12-31
77	(주)청주방송	CJB FM방송국	FM	2013-12-31
78	(주)청주방송	CJB DTV방송국	TV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79	(주)케이엔엔	KNN FM방송국	FM	2013-12-31
80	(주)케이엔엔	KNN DTV방송국	TV	2013-12-31
81	(주)SBS	SBS AM방송국	AM	2013-12-31
82	(주)SBS	SBS FM방송국	FM	2013-12-31
83	(주)SBS	SBS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84	(주)SBS	SBSDTV방송국	TV	2013-12-31
85	(주)YTN 라디오	YTN FM방송국	FM	2013-12-31
86	강릉문화방송(주)	강릉MBC AM방송국	AM	2013-12-31
87	강릉문화방송(주)	강릉MBC FM방송국	FM	2013-12-31
88	강릉문화방송(주)	강릉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89	강릉문화방송(주)	강릉MBCDTV방송국	TV	2013-12-31
90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 AM방송국	AM	2013-12-31
91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 FM방송국	FM	2013-12-31
92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93	광주문화방송(주)	광주MBC DTV방송국	TV	2013-12-31
94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 AM방송국	AM	2013-12-31
95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 FM방송국	FM	2013-12-31
96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97	대구문화방송(주)	대구MBC DTV방송국	TV	2013-12-31
98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AM방송국	A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99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FM방송국	FM	2013-12-31
100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01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02	목포문화방송(주)	목포MBC AM방송국	AM	2013-12-31
103	목포문화방송(주)	목포MBC FM방송국	FM	2013-12-31
104	목포문화방송(주)	목포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05	목포문화방송(주)	목포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06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AM방송국	AM	2013-12-31
107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FM방송국	FM	2013-12-31
108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09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10	삼척문화방송(주)	삼척MBC AM방송국	AM	2013-12-31
111	삼척문화방송(주)	삼척MBC FM방송국	FM	2013-12-31
112	삼척문화방송(주)	삼척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13	삼척문화방송(주)	삼척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14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 AM방송국	AM	2013-12-31
115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 FM방송국	FM	2013-12-31
116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17	안동문화방송(주)	안동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18	여수문화방송(주)	여수MBC AM방송국	A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19	여수문화방송(주)	여수MBC FM방송국	FM	2013-12-31
120	여수문화방송(주)	여수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21	여수문화방송(주)	여수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22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 AM방송국	AM	2013-12-31
123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 FM방송국	FM	2013-12-31
124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 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25	울산문화방송(주)	울산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26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 AM방송국	AM	2013-12-31
127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 FM방송국	FM	2013-12-31
128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29	원주문화방송(주)	원주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30	전주문화방송(주)	전주MBC AM방송국	AM	2013-12-31
131	전주문화방송(주)	전주MBC FM방송국	FM	2013-12-31
132	전주문화방송(주)	전주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33	전주문화방송(주)	전주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34	제주문화방송(주)	제주MBC AM방송국	AM	2013-12-31
135	제주문화방송(주)	제주MBC FM방송국	FM	2013-12-31
136	제주문화방송(주)	제주MBC서귀포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37	제주문화방송(주)	제주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38	청주문화방송(주)	청주MBC AM방송국	A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39	청주문화방송(주)	청주MBC FM방송국	FM	2013-12-31
140	청주문화방송(주)	청주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41	청주문화방송(주)	청주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42	춘천문화방송(주)	춘천MBC AM방송국	AM	2013-12-31
143	춘천문화방송(주)	춘천MBC FM방송국	FM	2013-12-31
144	춘천문화방송(주)	춘천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45	춘천문화방송(주)	춘천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46	충주문화방송(주)	충주MBC AM방송국	AM	2013-12-31
147	충주문화방송(주)	충주MBC FM방송국	FM	2013-12-31
148	충주문화방송(주)	충주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49	충주문화방송(주)	충주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50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 AM방송국	AM	2013-12-31
151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 FM방송국	FM	2013-12-31
152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53	포항문화방송(주)	포항MBC DTV방송국	TV	2013-12-31
154	한국방송공사	KBS제1AM방송국	AM	2013-12-31
155	한국방송공사	KBS제2AM방송국	AM	2013-12-31
156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1AM방송국	AM	2013-12-31
157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1AM방송국	AM	2013-12-31
158	한국방송공사	KBS강릉제1AM방송국	A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59	한국방송공사	KBS총주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0	한국방송공사	KBS안동 AM방송국	AM	2013-12-31
161	한국방송공사	KBS진주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2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3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4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5	한국방송공사	KBS목포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6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7	한국방송공사	KBS순천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8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1AM방송국	AM	2013-12-31
169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1AM방송국	AM	2013-12-31
170	한국방송공사	KBS원주제1AM방송국	AM	2013-12-31
171	한국방송공사	KBS포항 AM방송국	AM	2013-12-31
172	한국방송공사	KBS울릉 AM방송국	AM	2013-12-31
173	한국방송공사	KBS한민족방송제2AM방송국	AM	2013-12-31
174	한국방송공사	KBS울산제1AM방송국	AM	2013-12-31
175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1AM방송국	AM	2013-12-31
176	한국방송공사	KBS김제국제방송	국제방송	2013-12-31
177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78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79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80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2AM방송국	AM	2013-12-31
181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82	한국방송공사	KBS제1FM방송국	FM	2013-12-31
183	한국방송공사	국군FM방송국	FM	2013-12-31
184	한국방송공사	KBS한민족방송제1AM방송국	AM	2013-12-31
185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86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87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88	한국방송공사	KBS강릉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89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90	한국방송공사	KBS순천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91	한국방송공사	KBS울산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92	한국방송공사	KBS포항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93	한국방송공사	KBS사랑의소리AM방송국	AM	2013-12-31
194	한국방송공사	KBS울릉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195	한국방송공사	KBS제2FM방송국	FM	2013-12-31
196	한국방송공사	KBS부산FM방송국	FM	2013-12-31
197	한국방송공사	KBS대구FM방송국	FM	2013-12-31
198	한국방송공사	KBS창원FM방송국	F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99	한국방송공사	KBS충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00	한국방송공사	KBS안동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01	한국방송공사	KBS광주FM방송국	FM	2013-12-31
202	한국방송공사	KBS전주FM방송국	FM	2013-12-31
203	한국방송공사	KBS대전FM방송국	FM	2013-12-31
204	한국방송공사	KBS춘천FM방송국	FM	2013-12-31
205	한국방송공사	KBS충주FM방송국	FM	2013-12-31
206	한국방송공사	KBS강릉FM방송국	FM	2013-12-31
207	한국방송공사	KBS제주FM방송국	FM	2013-12-31
208	한국방송공사	KBS울산FM방송국	FM	2013-12-31
209	한국방송공사	KBS원주FM방송국	FM	2013-12-31
210	한국방송공사	KBS진주FM방송국	FM	2013-12-31
211	한국방송공사	KBS청주FM방송국	FM	2013-12-31
212	한국방송공사	KBS목포FM방송국	FM	2013-12-31
213	한국방송공사	KBS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14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15	한국방송공사	KBS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16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17	한국방송공사	KBS원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18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219	한국방송공사	KBS진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20	한국방송공사	KBS목포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21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22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23	한국방송공사	KBS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24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25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26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27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28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29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30	한국방송공사	KBS부산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31	한국방송공사	KBS울산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32	한국방송공사	KBS울산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33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34	한국방송공사	KBS대구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35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36	한국방송공사	KBS광주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37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38	한국방송공사	KBS대전제2DTV방송국	TV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239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3-12-31
240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41	한국방송공사	KBS춘천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42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43	한국방송공사	KBS청주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44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45	한국방송공사	KBS전주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46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47	한국방송공사	KBS창원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48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49	한국방송공사	KBS제주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50	한국방송공사	KBS목포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51	한국방송공사	KBS진주제1DTV지상파방송국	TV	2013-12-31
252	한국방송공사	KBS순천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53	한국방송공사	KBS강릉제2DTV방송국	TV	2013-12-31
254	한국방송공사	KBS강릉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55	한국방송공사	KBS원주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56	한국방송공사	KBS충주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57	한국방송공사	KBS안동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58	한국방송공사	KBS포항제1DTV방송국	TV	2013-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259	한국방송공사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FM	2013-12-31
260	한국방송공사	KBS제3표준FM방송국	FM	2013-12-31
261	한국방송공사	KBS경인제1DTV방송국	TV	2013-12-31
262	OBS경인TV(주)	OBS경인DTV방송국	TV	2013-12-3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17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III. 시청자 의견 청취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5.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8개 지상파방송사업자, 262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전주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청주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주)MBC경남, 목포문화방송(주), 여수문화방송(주), 안동문화방송(주), 원주문화방송(주), 충주문화방송(주), 삼척문화방송(주), 포항문화방송(주), 강릉문화방송(주), (주)SBS,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G1, (주)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주)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평화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주)YTN라디오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3. 8. 5.(월) ~ 2013. 8. 30.(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 총 100건 접수 : 전자우편 95건, 우편 3건, 팩스 2건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1	○○○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임
2	○○○	불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교방송은 공익성이 뛰어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
3	○○○	대구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청취가 가능함○ 청취자와 소통이 원활하며 책임감 있게 운영함
4	○○○	경인FM 외 4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락 위주의 방송을 다양해야 할 것임○ 신뢰도 증진을 위한 호출부호의 상시적 사용을 원함○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5	○○○	전주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촉구함○ 지역 사업과 발전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며,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야 함
6	○○○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에 기여하므로 전국의 모든 극동 방송의 재허가가 필요함
7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인기 종목에 대한 동시 생중계로 전파낭비가 심화되고 있음○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중계방송이 필요함
8	○○○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공적책임을 가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
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라마 내용의 규제가 필요함○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할 것임○ 사건 사고를 보도하거나 극화할 때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미화를 자제해야 함
10	○○○	KBS 제2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을 통해 청취해야만 하는 수도권 지역 이외에 청취자들을 위해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지역의 확대를 촉구함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11	○○○	KBS 대전MBC TJB	o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요구함
12	○○○	CBS FM	o 공공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방송함 o 다양하고 질 높은 방송을 제공하여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
13	○○○	CBS FM	o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o 종교 방송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방송으로 정서 함양에 기여함
14	○○○	KBS	o 정치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o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선출해야함 o 낭발되는 외국어 사용 빈도를 줄여야 함
15	○○○	CBS	o 공적책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공익성에 부합하는 방송을 운영함 o 신뢰성이 높은 방송이므로 재허가가 필요
16	○○○	-	o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할 것임
17	○○○	MBC	o 시청자의 권익 보장을 촉구함 o 연예인 출연 정지에 대한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것임
18	○○○	KBS MBC	o 편파적인 보도의 규제가 필요함 o 외주제작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해 창작물의 질을 저하시킴 o 미미한 수준의 EBS 시청료 확대가 필요함 o KBS 시청료 인상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함
19	○○○	극동방송	o 상업성이 낮으며, 국내외 난민 성금 모금 활동에 기여함 o 기독교 신앙 활동에 유익함
20	○○○	CBS	o 공정한 보도를 위해 힘쓰고 있음 o 소외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공익 실현에 공헌함
21	○○○	KBS	o 전반적으로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방송함 o KBS1TV의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을 요구함
22	○○○	부산 극동방송	o 기독교 신앙 활동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지역 극동 방송국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함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23	○○○	CBS 극동방송	o 기독교 정보와 더불어 다른 분야의 뉴스를 함께 전달하여 일상생활에 유익함 o 다양한 지역의 방송국 개국을 촉구함
24	○○○	극동방송	o 타 종교를 비방하지 않으며,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잘 나타남 o 전국적으로 분산된 극동방송은 각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
25	○○○	대전 극동방송	o 신앙 활동에 유익하며, 활발한 기독교 네트워크를 도모함 o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를 방송함
26	○○○	-	o 출연 연예인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며, 출연 정치 연예인에 대한 타당성을 요구함
27	○○○	KBS	o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할 것임 o 보도 내용의 공정성을훼손되었기 때문에 KBS의 재허가를 반대함
28	○○○	KBS MBC	o 국가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함
29	○○○	KBS MBC	o 편파 보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은 재 허가되어서는 안 됨
30	○○○	KBS	o 수신료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지상파에 대한 신뢰도이 낮기 때문에 재허가를 반대함
31	○○○	KBS MBC	o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함 o 정치, 경제 뉴스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을 해야 함
32	○○○	KBS MBC OBS	o 일기 예보의 축약된 정보의 전달을 지양해야 하며, 규칙적인 방송 시간을 보장해야 함 o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임
33	○○○	MBC SBS	o 방송의 다양성과 프로그램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자의 의견 수렴을 보장해야 함 o 출연 정치 연예인에 대한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34	○○○	불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활동에 유익함 ○ 사회 질서 유지 및 지역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갈등을 해소함
3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송의 내용, 구성, 시간의 규제 필요함 ○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공익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드라마의 폭력적 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외래어보다는 국어사용을 장려해야함
36	○○○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정당에 유리한 보도 등 정치적 편파 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37	○○○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성이 짙은 보도 내용의 규제가 필요함 ○ 정치적 공정성이 담보된 보도가 필요함 ○ 책임감 있고 질 높은 보도가 필요함
38	○○○	KBS MBC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공정한 보도 형태가 요구됨
39	○○○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제 장비를 선호하는 방송국의 장비구매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방송국 운영의 제도 개선을 요구함
40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극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드라마를 배제하고 내용의 다양성 확보해야 할 것임 ○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
41	○○○	MBC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변해야 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방송이 지속됨에 따라 재 허가를 반대함
42	○○○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프로그램의 폐지와 재방영을 반대하며,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요구함
43	○○○	KBS MBC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침해하였음 ○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었음
44	○○○	불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종교 방송에 비해 불교 방송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함 ○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공헌함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45	○○○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 등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
46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의 시청료 인상에 있어 투명성 요구함 ○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국민 지식수준과 안목에 기여해야 할 것임
47	○○○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전무함 ○ 정치적 권력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4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증가하면서 사회윤리를 저해시킴 ○ 국외보다는 국내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보도해야함
49	○○○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활동에 기여하며 재정 운영에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
50	○○○	KBS SBS O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미취학 어린이 프로그램의 부재 ○ KBS 방송 시간의 정확성을 요구함 ○ OBS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명칭의 표시를 요구함
51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시간의 제한을 요구함 ○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함
52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경우 지역 방송의 편성을 축소하고 전국 방송의 확대를 요구함
53	○○○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함 ○ 공정성을 기반으로 심층보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재 허가를 반대함
54	○○○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교류가 이루어지며 기독교 신앙 활동에 기여함 ○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함
55	○○○	대구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으며 청취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함
56	○○○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운서의 보도 태도에 문제가 많고 언중에 모범이 되지 않음
57	○○○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향된 뉴스 진행 진행으로 물의를 빚어왔기 때문에 방송 재 허가를 반대함 ○ 방송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58	○○○	KBS 제1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내용에 있어 사연보다는 음악 위주의 방송을 요구함 ○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함
5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물에 대한 표절 등 제작 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60	○○○	불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활동에 기여하며 고정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재허가가 필요함
61	○○○	KBS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62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이기 보다는 특정 이념에 편향된 방송을 합으로써 공공성을 잃어버렸음
63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좌편향적인 형태의 방송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함 ○ 편향적인 방송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 허가를 부결해야 함
64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뉴스 앵커에게는 공정한 클로징 멘트가 요구되지만 SBS의 일부 앵커들은 편향적 시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재허가 시 이를 반영해야 함
65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립적이지 못한 편향적인 뉴스 보도를 전달하고 있으며, 정보 전달보다는 이윤 추구에 더 힘쓰고 있다고 보임 ○ 예능, 드라마 등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보임
66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지역적 편향성이 강한 방송국이기 때문에 재허가를 반대함
67	○○○	대구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정성이 요구되며, 대구, 경상도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지 못함 ○ 게시판에 올라오는 시청자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하며 임의 삭제를 금해야 함
6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에서 사투리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뉴스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올바른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을 구사해야 함
69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앵커의 사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70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향적인 뉴스 보도를 전달하고 있는 뉴스 앵커의 공정성이 요구됨
71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들은 뉴스 앵커의 중립적 클로징 멘트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재 허가를 반대함
72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편향적 보도 태도를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 진실성이 요구됨 ○ 잘못된 정보(용어, 마크)의 전달로 시청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킴
73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앵커의 냉소적 보도 태도는 시청자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음
74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앵커의 공정한 클로징 멘트가 요구됨 ○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지나친 간접 광고의 자체를 요구함
75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의 뉴스에서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방송사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임
76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익성에서 벗어난 태도로 보도하는 앵커의 해직을 생각해야 할 것임
77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SBS는 반드시 재 허가를 취소해야 함
7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의 앵커와 기자는 사실 전달에 충실히 하며 정치적 민감한 사안은 뉴스 보도의 객관성을 지켜야 함
79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파적 언론 선동을 한 SBS의 재 허가를 반대함
80	○○○	부산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줌으로써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음 ○ 종교 활동과 더불어 난민 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
81	○○○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앵커는 방송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 허가를 반대함
82	○○○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 계층과의 소통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83	○○○	충주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 청취자에게 유익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 허가를 찬성함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84	○○○	KBS MBC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3사의 방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MBC 뉴스는 정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임
85	○○○	전주 MBC JTV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공익성과 도덕성을 준수해야 할 것임 ○ 공영방송이 중소기업 시장인 이벤트 사업에 진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86	○○○	안동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87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시청자위원회 선정하지 않았음 ○ 안동MBC의 시청자위원회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87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률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드라마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뉴스의 재방송을 피해야 하며 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함
88	○○○	청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프로그램 공익성,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방송국 운영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
89	○○○	전주 MBC 전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 ○ 수익성의 이유로 지역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지역 발전 기여의 역할을 못 함 ○ 여론 다양성의 보장 요구함
90	○○○	대구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 신앙 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대구 극동방송의 재허가를 찬성함
91	○○○	KBS MBC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형성에 막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공정성에 문제를 느낌 ○ KBS 움부즈맨 프로그램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지 않음 ○ KBS 수신료의 인상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함 ○ MBC 뉴스는 편파보도로 뉴스의 공정성, 신뢰성이 하락함 ○ MBC 지역 방송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었음 ○ SBS 내부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임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주요 내용
92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는 애국심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방송하고 있으나 비율을 늘려야 할 것임
93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있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필요함
9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을 위해서 뉴스에서의 줄임말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임
95	○○○	JTV 전주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향적인 보도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임 ○ 다양한 프로그램의 편성이 요구되며,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임
9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등 방송에서 선정적인 노출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임
97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프로그램의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이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함
98	○○○	삼척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MBC는 강원도 지역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음 ○ 방송국 자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함
99	○○○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내용의 건전성, 교육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수신료 납부에 있어 타당성을 요구함
100	○○○	극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소외 계층과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 방송의 재허가를 찬성함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심사항목별 평가 배점**

- 심사항목별 평가 배점은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13.5.27)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IV.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2013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 점	방송법 관련조항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제17조제3항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150점	제10조제1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점	제10조제1항
4. 경영의 적정성	50점	제10조제1항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점	제10조제1항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85점	제17조제3항
8.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75점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점	제17조제3항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재허가 심사평가 항목 관련 참고자료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제3항

<방송법 관련 조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법 제17조제3항
<p>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5. 재정 및 기술적 능력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p>제17조(재허가 등)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 기본원칙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
- 10개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배점은 재허가심사위원회에 위임
 -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심사항목 구조('10년 재허가)를 유지하되, '13년 재허가 심사 기본원칙에 따라 배점 조정

□ 세부심사항목 배점 구성

-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방송평가와 재허가 계획 대비 이행실적 평가가 되므로 배점은 실적보다 계획에 대한 배점 비중 필요
 - 허가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이 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점 고려

<2013년도 세부심사항목 중 실적 및 계획 배점>

구분	심사항목	2013년 배점		
		배점	실적	계획
1	방송평가	400	400	-
2	방송의 공익성, 공적책임	150	65	85
3	프로그램 편성·제작	75	30	45
4	경영 적정성	50	20	30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	20	45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50	20	30
7	시청자 권리보호	85	40	45
8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	30	45
9	허가 조건 이행, 준수사항 등	50	50	0
10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합계		1,000점	675점 (400점)	325점

<2013년도 지상파 재허가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 지표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계량
1-1. 방송 평가 점수 환산 반영		계량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150	비계량
2-1.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40	비계량
2-2.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실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50	비계량
2-3. 편성의 공적책임 · 공익성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2-4. 편성의 공적책임 · 공익성 관련 실현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35	비계량
2-5.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례	감점	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의 적정성	75	비계량
3-1.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3-2. 향후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45	비계량
4. 경영의 적정성	50	비계량
4-1. 경영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4-2. 경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30	비계량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	비계량
5-1.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10	계량
5-2. 재원구조, 추정 재무제표 및 수입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5-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5-4.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5	비계량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50	비계량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6-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30	비계량
7. 시청자 권익보호	85	비계량
7-1. 시청자 권리보호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20	비계량
7-2. 시청자 민원 처리의 적정성	20	비계량
7-3. 시청자 권리 보호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45	비계량
8.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75	비계량
8-1.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8-2.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8-3.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방안 · 실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0	비계량
8-4.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5	비계량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이행 여부 등 기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0	비계량
9-1.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의 적정성	30	비계량
9-2. 기타 방통위 정책관련 준수사항 이행 실적의 적정성	15	비계량
9-3. 기타 방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비계량
10.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감점	비계량
10-1. 시정명령 건수별 감점, 시정명령 이행여부 평가	감점	계량
합계	1,000	평균점수

3 심사평가 방식

□ 평가원칙

-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지표

-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 : 방송평가, 시정명령 회수 등에 따른 평가점수로 반영

- 비계량 :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심사항목별로 5등급 척도로 평가)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구분	등급	내용	평점 환산비율(%)	배점별 환산점수							
				40	35	30	25	20	15	10	5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40	35	30	25	20	15	10	5
2	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32	28	24	20	16	12	8	4
3	미	보통	해당 배점의 60%	24	21	18	15	12	9	6	3
4	양	미흡	해당 배점의 40%	16	14	12	10	8	6	4	2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8	7	6	5	4	3	2	1

□ 평가방법

- o 비계량항목 심사 평가점수 집계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제외

※ 다만,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1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 o 최종 심사평가 점수는 세부 심사항목별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 점수를 합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세부심사항목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최종 심사평가 점수 : ① + ②

- o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평가유예)에 따라 방송평가 결과가 없는 방송국의 경우, 재허가 심사평가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 o 재허가 조건 등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 o 자료 미제출 사업자의 경우 세부심사항목별 배점 및 등급과 상관 없이 0점 처리

□ 평가방식

- o 심사평가는 <방송사업자> 단위로 하며, 방송평가·행정처분·편성 등 채널별 특성이 반영되는 심사항목은 방송국 단위로 평가

4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① 방송평가 : 400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안)
1	방송평가 (400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 평가 결과	계량	400점	① 11년, 12년 방송평가 점수 평균 후 환산

□ 2011년 방송평가 환산

- o TV(900점 만점) : 방송평가 점수 × (10/9)
- o R(500점 만점) : 방송평가 점수 × (10/5)

□ 2012년 방송평가 환산

- o TV(1,000점 만점) : 방송평가 점수
- o R(500점 만점) : 방송평가 점수 × (10/5)

□ 최종 방송평가 환산

- o [(2011년 방송평가 환산 + 2012년 방송평가 환산) ÷ 2] × 0.4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 150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150점)	2-1.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이행계획 대비 이행 실적 ② 기타 방송의 공적책임 등 제고실적 ③ 자체심의제도 운영 현황(기구, 인력, 심의절차, 방법, 심의실적 등) ④ 종합편성·보도전문 : 편성규약 제정 · 공표 현황 및 이행실적 ⑤ 한국방송공사(KBS) : 방송법에서 정한 KBS의 공적책무 평가 	
	2-2.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실현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3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계획 ② 한국방송공사(KBS) : 방송법에서 정한 KBS의 공적책무 계획 평가 	
	2-3. 편성의 공적책임 · 공익성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편성의 공적 책임 · 공익성 이행계획 대비 이행 실적 (1)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2)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3) 재난방송 편성실적 (4)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실적 (5) 노인 프로그램 편성실적 (6) 다문화 프로그램 편성실적 	
	2-4. 편성의 공적책임 · 공익성 관련 실현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3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편성의 공적책임 · 공익성 관련 실현 계획 (1)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2) 장애인방송 편성계획 (3) 재난방송 편성계획 (4)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계획 (5) 노인 프로그램 편성계획 (6) 다문화 프로그램 편성계획 	
	2-5.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례	계량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처분(과태료 · 과징금 · 형벌)에 따른 감점 ②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 	

③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정성 : 75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3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의 적정성 (75점)	3-1. 프로그램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 편성 계획 대비 이행실적 ② 방송분야별 · 제작주체별 편성계획 대비 이행실적 (1)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방송시간 (2)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제작방송시간 (3) 분야별 방송비율 (4)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 (5) 지역방송국 : 자체 제작방송의 분야별 방송비율 (6) 국내외 수상실적 평가 	
	3-2. 향후 프로그램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	4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3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방송 프로그램 기획 · 편성의 기본방향 ② 13년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주요 프로그램 제작 계획 ③ 방송분야별 · 제작주체별 편성계획 (1)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방송시간 (2)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제작방송시간 (3) 분야별 방송비율 (4)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 (5) 지역방송국 : 자체 제작방송의 분야별 방송비율 (6) 지역방송 : 매출액 대비 방송제작비 투자 계획 	

④ 경영의 적정성 : 50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4 경영의 적정성 (50점)	4-1. 경영계획 이행 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20점			<p>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경영계획 대비 이행실적</p> <p>(1)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p> <p>(2) 인력운영 실적</p> <p>(3) 적금별 인력구성 및 인건비 현황</p> <p>(4)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p> <p>(5)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채용 현황</p> <p>(6) 계약직 및 파견직 운영 현황</p> <p>② 분야별 투자실적 현황</p> <p>(1)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실적</p> <p>(2) 직원 교육 투자 현황 및 세부 실적</p> <p>(3)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세부 실적</p> <p>(3)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이행실적</p> <p>(4) 이사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p> <p>(5) 자금 조달 운영계획 및 이행실적</p> <p>(6) 민영방송 : 소유 경영 분리, 경영 투명성 관련 세부 실적, 배당실적</p>
	4-2. 경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 30점			<p>① 조직 운영의 기본방침 및 효율성 강화 방안</p> <p>② 인력 운영 계획</p> <p>③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채용 계획</p> <p>④ 분야별 투자 계획</p> <p>(1)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계획</p> <p>(2) 직원 교육 투자 계획</p> <p>(3) 연구개발 투자 계획</p> <p>(5)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p> <p>(6)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p> <p>(7)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계획 및 전략</p> <p>(8) 민영방송 : 소유 경영 분리, 경영 투명성 관련 세부 계획, 배당계획</p>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65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점)	5-1.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계량 10점			<p>①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p> <p>(1) 총자산이익률</p> <p>(2) 자기자본증가율</p>
	5-2. 재원구조, 추정 재무제표 및 수입계획의 적정성				<p>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재원 운영 계획 대비 이행실적</p> <p>② 13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원구조의 적정성</p> <p>③ 추정 재무제표 · 수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p> <p>(1) 재원구조 운영계획의 적정성(수신료, 광고, 협찬, 판매 등)</p> <p>(2) 과거 실적 대비 향후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평가</p> <p>④ 민영방송 : 재무구조 위험분산(내부 유보금) 등 재원운영 현황</p>
	5-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10점			<p>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기술 등 투자 계획 대비 이행실적</p> <p>(1) 방송기술 관련 투자 현황(전체 방송시설, 프로그램 제작시설, 송신관련 시설 등)</p> <p>(2) 난시청 해소 관련 실적</p> <p>(3) 디지털 전환 관련 실적</p> <p>(2) 방송사고 주요 현황 및 방송사고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p> <p>(3) 국산장비 사용 현황</p> <p>(4) 네트워크 등 시스템 보안 강화 현황</p> <p>(5) 방송관련 신규기술 개발 실적</p>
	5-4.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p>① 방송기술 관련 투자 계획</p> <p>②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p> <p>③ 난시청 해소 계획</p> <p>④ 국산장비 사용 계획</p> <p>⑤ 방송관련 신규기술 개발 계획</p>

⑥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 50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50점)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대비 이행실적 ② 기타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 외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 환원 실적 (2) 방송 프로그램 수출 실적 (3) 외국 공동제작 현황 및 방송교류협약 체결 (4) KBS, MBC, SBS : 유료방송, 지역 방송 등 중소방송과의 상생 및 협력 실적 등 (5) SBS :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3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향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및 기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 환원 계획 (2) 방송 프로그램 수출 계획 (3) 외국 공동제작 현황 및 방송교류협약 계획 (4) KBS, MBC, SBS : 유료방송, 지역 방송 등 중소방송과의 상생 및 협력 계획 등 (5) SBS :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계획

⑦ 시청자 권리보호 : 85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7 시청자 권리보호 (85점)	7-1. 시청자 권리보호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시청자 권리 보호 계획 대비 이행실적 ② 종합편성·보도전문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청자위원회 운영 기본 방향 (2)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3) 시청자위원회 방송프로그램 평가 및 반영실적 ③ 종합편성·보도전문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현황 ④ 종합편성·보도전문 : 시청자 평가원 운영 현황 ⑤ 종합편성·보도전문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현황
	7-2. 시청자 민원 처리의 적정성	비계량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청자 민원처리 현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청자 민원처리 전담 부서 현황 (2)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 (3) 자체 민원처리 결과 및 처리 적정성 ②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3) 시청자 의견수렴 관련 홈페이지 등 운영 현황
	7-3. 시청자 권리 보호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	4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방송사 고지 실적 ② 13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향후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계획

⑧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 75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8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점)	8-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대비 이행실적 ② 캠페인·행사·기부 등 기여실적 종합평가
		8-2.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실적 종합 평가
		8-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방안·실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3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향후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방안 및 실현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종합평가 (1) 기본방향 (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 세부추진계획 등
		8-4.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3년도 재허가 심사시 제출한 지역 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계획 (1) 제작 및 편성 계획 등 종합평가

⑨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50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점)	9-1.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의 적정성	비계량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허가 또는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이행의 적정성 ② 허가 또는 재허가시 부과한 권고 사항 이행의 적정성
		9-2. 기타 방통위 정책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비계량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협찬 운영 현황 ② TV : 05년도 낮방송 확대 관련 권고사항 이행의 적정성 ③ TV : 12년도 심야방송 확대 관련 권고사항 이행의 적정성
		9-3. 기타 방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비계량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② 재허가 신청서 작성의 성실성, 계획·실적 작성체계 ③ 재허가 현장 조사 결과 등 ④ 방송법 소유제한 위반 여부 ⑤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 ⑥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신원조회 결과

⑩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 감점

구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
2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시정명령 행정처분 시정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계량	감점	① 시정명령 건수별 감점 ② 시정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건수 감점

V.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총 13인)
-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배제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분야	성명	현직
심사위원장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미디어 (3인)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장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법률 (2인)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
	강경국	법무법인 양현 변호사
경영·회계 (2인)	김준석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주진환	회계법인 새시대 공인회계사
기술 (2인)	박상일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허남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시스템연구부장
시청자 (2인)	정기현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사무조직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2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2013. 10. 22. ~ 11. 26.(총 13일)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제1차 심사위원회 (3일)	10.22(화)~10.2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신청서 검토 ○ 세부심사기준, 추가 제출자료 및 의견청취 대상 사업자 등 의결 등
제2차 심사위원회 (6일)	11. 6(수)~11. 8(금) 11.11(월)~11.12(화) 11.1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허가 신청서 검토 ○ 사업자 의견청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MBC, SBS 등 재허가 대상 38개사
제3차 심사위원회 (4일)	11.19(화)~11.20(수) 11.25(월)~11.2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제출자료 검토 ○ 계량평가 및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의결 ○ 심사평가, 심사의견서 의결 등

- 심사 장소 : 방통위 4층 회의실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허가 대상 38개 사업자에 대해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결정
- 참석대상자
 -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의견청취 일정 및 참석자 현황

일자	방송사명	성명	직위	비고
11/6 (수)	KNN	이만수	대표이사	
		문혁주	편성책임자	
		강호찬	최대주주	(주)넥센 사장
대구방송	대구방송	김정길	대표이사	
		이문정	편성책임자	
		김태성	최대주주	귀뚜라미그룹 회장
광주방송	광주방송	정일윤	대표이사	
		김홍석	편성책임자	
		최종만	최대주주	(주)호반건설 사장
대전방송	대전방송	이왕돈	대표이사	
		홍성진	편성책임자	
		지평은	최대주주	(주)우성사료 사장
울산방송	울산방송	이상용	대표이사	
		이민성	편성책임자	
		이정	최대주주	한국프렌지공업(주) 사장
11/7 (목)	OBS 경인TV	윤승진	대표이사	
		최동호	편성책임자	
		백정수	최대주주	영안모자(주) 부회장
전주방송	전주방송	신호균	대표이사	
		전승철	편성책임자	
		허정석	최대주주	일진그룹 사장
청주방송	청주방송	이궁	대표이사	
		이한복	편성책임자	
		이두영	최대주주	(주)두진 사장
G1	G1	김영철	대표이사	
		홍대선	편성책임자	
		김찬용	최대주주	(주)대양 사장
제주방송	제주방송	김양수	대표이사	
		정효성	편성책임자	
		신언식	최대주주	(주)한주홀딩스코리아 사장
경기방송	경기방송	김방자	대표이사	
		노광준	편성책임자	
		육종택	최대주주	호주건설 회장
11/8 (금)	한국방송 공사	길환영	대표이사	
		전진국	편성책임자	
	MBC	김종국	대표이사	
	SBS	백종문	편성본부장	
		우원길	대표이사	
		홍순철	편성책임자	
	YTN라디오	김진원	최대주주	(주)SBS미디어홀딩스 사장
		배석규	대표이사/편성책임자/ 최대주주	(주)YTN라디오 사장

출석일	방송사명	성명	직위	비고
11/11 (월)	대전MBC	김창욱	대표이사	
		김종찬	편성책임자	
	대구MBC	차경호	대표이사	
		허시덕	편성책임자	
	안동MBC	김상철	대표이사	
		권영두	편성책임자	
	부산MBC	김수병	대표이사	
		박지현	편성책임자	
	MBC경남	황용구	대표이사	
		김사숙	편성책임자	
11/12 (화)	울산MBC	윤길용	대표이사	
		김성환	편성책임자	
	포항MBC	이우철	대표이사	
		김철승	편성책임자	
	청주MBC	이용석	대표이사	
		김정승	편성책임자	
	충주MBC	이용석	대표이사	
		신덕식	편성책임자	
	춘천MBC	김재형	대표이사	
		이순철	편성책임자	
11/18 (월)	원주MBC	고민철	대표이사	
		정문수	편성책임자	
	제주MBC	최진용	대표이사	
		변창영	편성책임자	
	광주MBC	서경주	대표이사	
		김휘	편성책임자	
	전주MBC	전성진	대표이사	
		김병현	편성책임자	
	목포MBC	김성수	대표이사	
		김선태	편성책임자	
	여수MBC	윤영욱	대표이사	
		정용기	편성책임자	
	강릉MBC	임무혁	대표이사	
		신종엽	편성책임자	
	삼척MBC	임무혁	대표이사	
		최재석	편성책임자	
11/19 (화)	기독교방송	이재천	대표이사	
		변상욱	편성책임자	
	불교방송	이채원	대표이사	
		박상필	편성본부장	
	평화방송	안병철	대표이사	
		박군수	편성책임자	
	원음방송	이현숙	대표이사	
		조은형	편성책임자	
	극동방송	민산웅	대표이사	
		공부영	편성책임자	

4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 개요

○ (근거)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4항

○ (접수기간) 2013. 8. 5. ~ 8. 30, 4주간

○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공고방법) 관보, 홈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광역자치단체),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안내방송(자막 및 음성), 방통위 블로그 등

매체	고지 방법
TV	○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 이상) ○ 하단 훌립자막, 방송진행중 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 하단 훌립자막의 경우 1회당 2번 반복
	○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 이상) ○ 방송진행중 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라디오	○ 방송진행중 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 주시청시간대 : 평일(19:00~23:00), 주말·공휴일(18:00~23:00)

※ 재허가대상 방송국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고지(단, 본사·지역국이 있는 방송 사업자의 경우, 본사 고지 내용을 Relay 하는 경우 본사 고지로 대체 가능)

- 시청자 의견청취 안내문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주)○○ 방송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결과

○ 총 100건 접수 : 전자우편 95건, 우편 3건, 팩스 2건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접수

□ 심사평가 반영

○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허가 심사위원회 보고하여 심사평가에 반영

※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실적을 심사평가에 반영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는 2013. 12. 31.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평가 등 심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 11. 26.(화)

1. 종합소견

- (방송환경)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의 매출 점유율, 영업 이익률, 광고매출 및 시청점유율 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지상파 매출점유율	36.9%	35.0%	32.0%
지상파 영업이익률	2.03%	2.88%	0.58%
지상파 매출 중 광고비중	61.4%	59.8%	55.1%
지상파 시청점유율	64.9%	62.7%	61.6%

-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환경과 매체간 경쟁은 광고매출이 감소하고 기타사업 매출은 증가하는 등 지상파 매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 지상파 기타사업 매출 비중 : '10년 4.1% → '11년 4.2% → '12년 5.1%

-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무구조 개선 등 수익 다변화를 위해 비 방송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져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
- 향후에도 매출구조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 특히, 매출 구조 변화는 지역방송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며 제작 역량, 미래 환경 대응 등에 있어 중앙과 지역의 편차 심화

<2012년도 기타사업 수익 현황>

KBS	MBC	SBS	부산MBC	대구MBC	MBC경남	KNN	대구방송
1.0%	2.3%	2.8%	24.0%	29.0%	36.0%	23.6%	20.3%

- 또한, 일부 지역방송의 경우 위험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거나, 비방송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의 영향력을 활용할 우려

* 광주방송(주식 - 37억), 울산방송(펀드 - 19억), 포항MBC(극장 투자 - 98억), 울산MBC(지분증권 - 1억) 등

* 광주방송(자회사를 통한 건설사업), 청주방송(웨딩사업), MBC경남(웨딩·영화 사업), 전주MBC(국내외 여행사업) 등

- 따라서,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재정운영 등 사업계획의 이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며, 재무구조 악화에도 프로그램 제작 등 공적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필요

- (10년 재허가 조건 이행 등) '10년도 재허가시 부과한 디지털 전환 조건 등은 비교적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나 지역 제작비 투자 및 협찬 규정 준수 등은 일부 미흡

- 디지털 전환 : 방송보조국 392개 구축, 디지털 채널 재배치 완료('13.10)
- 지역제작비 투자 : '11년 7개사 경고, '12년 4개사 위반
- 협찬 고지 관련 과태료 처분 : KBS(10회, 5천만원), MBC(5회, 2천5백만원), SBS(2회, 1천만원), 원음방송(1회, 5백만원), 극동방송(1회, 5백만원)

- (편성규약·시청자 보호 등) 방송법 제4조에 따른 편성규약 제도 도입 이후 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 위원회 운영실적 등 관련 실적 저조
 - 방송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증가 등에 따른 자체심의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 시청자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방송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이 필요
 - 프로그램의 안정적 송출을 위해 네트워크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송출시설 및 내부 전산망 등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
- (중앙 지상파) KBS는 적자구조 전환에 따른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자체적인 경영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며 방송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 시정 필요
 -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되 경영 악화에 대비한 경영 합리화 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하고 파업 이후 본사 조직의 안정화 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
 - SBS는 최초 허가 당시 약속한 사회환원 조건을 유지하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을 강화하며, 미디어 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에 따른 지역민방의 편성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필요
- (OBS·종교방송 등) OBS경인TV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관한 최대주주의 의지 미흡, 사옥이전, 최다액출자자의 국회 위증 판결 등이 문제, 경기방송은 재허가기간 중 방송법령상 소유제한 위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나친 지자체 광고 중심의 매출 구조 개선이 필요
 - 종교방송은 광고 의존도가 높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부금 중심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12년도 종교방송 재원구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총계	방송사업 매출액				기타사업 매출액
		현금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기타	
불교방송	15,661	2,213 (14.1%)	9,176 (58.6%)	1,841 (11.8%)	0	2,431 (15.5%)
평화방송	21,691	35 (0.2%)	7,209 (33.2%)	768 (3.5%)	737 (3.4%)	12,942 (60.0%)
기독교방송	84,574	15,895 (18.8%)	32,118 (38.0%)	25,795 (30.5%)	1,389 (1.6%)	9,377 (11.1%)
원음방송	5,344	442 (8.3%)	4,166 (78.0%)	377 (7.1%)	0	359 (6.7%)
극동방송	55,289	47,817 (86.5%)	3,663 (6.6%)	1,332 (2.4%)	0	2,477 (4.5%)

- (지역방송) 지역MBC의 경우 MBC 본사 경영진의 이사 겸직이 점차 강화되어 독자적인 경영 및 기타 주주의 경영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 '13년 상반기 적자 전환(MBC경남 제외)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제고 등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고, 위험자산 투자에 따른 손실(울산MBC 지분증권 1억, 포항MBC 극장 투자 98억) 및 과다 차입금(청주MBC 70억) 등이 문제
 - 지역민방은 대표이사 회장(최다액출자자 등)과 전문경영인의 권한 범위가 불분명하고 방송전문경영인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청주·전주·광주방송의 경우 1년) 책임경영이 어려운 상황
 - 또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손실(광주 37억·울산 19억)이 발생되고, 특수 관계자 거래(전주 전환사채 50억, G1 연대보증 120억), 과도한 배당(전주 54.3%, 제주 22.8%) 및 장단기 차입금(청주방송 38억) 등이 문제

2. 방송사업자별 주요 평가 의견

구분	주요 내용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향후 적자 예산 편성, 인건비 비중 가중 등 KBS 자구 노력이 부족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인상시 경영 합리화 방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시청자 권익 증진 계획 등이 필요하며 수신료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임 ○ KBS 지역국 경영 효율성 제고, 자율성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이 필요 ○ 방송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관련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지상파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송신 및 중계시설 확충 등 수신 환경 개선 계획 및 이행실적을 점검할 필요 ○ KBS경인제1TV의 경우 최초 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체편성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현 재허가 조건 유지 필요
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파업 이후 매출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보이고 있으나 향후 수익 창출 전망과 계획은 미흡하여 대응 방안 필요 ○ 지상파 광고매출 감소 경향에 따라 지역MBC의 경영난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사 차원의 지역MBC 경영 합리화 방안과 지원 대책이 강구될 필요 ○ 지역MBC에 대한 과다한 배당 요구를 지양하여 지역MBC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지역MBC 공동제작, 겸임 사장 임명 등 지역MBC 광역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MBC 이사회는 거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지역MBC 대표나 이사회의 독자적인 경영 또한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지역 MBC의 독자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과 함께 노사 갈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구분	주요 내용
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전환 이후 수익사업이 계열회사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송사업자인 SBS 수익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지주회사와 계열회사 등의 통합 재무제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으며 지주회사 체제하의 수익배분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 ○ 콘텐츠 수익배분율이 방통위 권고에 따라 5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SBS미디어홀딩스의 역할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SBS 콘텐츠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계열사 판매 수익배분에 대한 SBS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조건 부과를 검토할 필요 ○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가 지역민방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권 보장을 위해 SBS 편성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기구로 '편성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집행결과를 차기 재허가시에 검토할 필요 ○ 최초 허가시 약속이행사항인 기부금 공제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 재단에 출연하는 조건은 계속 유지가 필요
OBS 경인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대주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등 재무 구조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방송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재정적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담보 없이 재허가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되며, 재허가 보류 등 조치를 검토할 필요 ○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자기자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14년부터 흑자전환과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추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2차 증자 이행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음 ○ 수입증가가 어려울 경우 인건비 감축 등 지출의 감소와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영개선 대책 제시와 경영 다각화를 위한 수익 구조 다변화가 필요 ○ 최대주주의 방송경영의 개입 문제 등 경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 하며, 지역뉴스 편성 확대,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향상 등 지역성 강화가 필요 ○ 최초 허가시 약속한 사옥 이전 관련 사항 및 최다액출자자의 대법원 판결결과 등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검토가 필요

구분	주요 내용
지역MBC (18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환경 변화 및 지역MBC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MBC의 경쟁력 강화, 지역성 구현 및 안정적 방송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 경영효율성 제고 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방송환경 변화 대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MBC 광역화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화 추진시 합병의 시너지 효과 분석, 노사간 불신 해소, 지역 사회 차별화 해소, 시청자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 경영 개선 차원에서 MBC 본사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차등배당 방안을 검토할 필요 ○ MBC경남의 경우, 서부경남 편성계획 이행실적이 노조 파업으로 미흡한 점과 변경허가시 진주지역의 뉴스 보도권 보장 취지 등을 고려하여 확실한 이행계획을 위한 담보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역MBC 재무구조 중 특이사항이 있는 방송사는 5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MBC : 매출채권의 대손총당금설정율(4.12%)이 높은편 - 울산MBC : 과거 지분증권에 28억원을 투자하여 1억원의 감액손실 - 포항MBC : 포항시네마 주식 100%를 0원으로 매각하여 98억원 손실 - 청주MBC : 단기차입금 70억원에 대한 상환계획 및 퇴직급여총당금 부족자금 15억원에 대한 적립계획 필요 - 원주MBC : 주주인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액의 기부금은 지양하고 지역사회 타 공익재단 등에 균형있는 기부 등을 할 필요
지역민방 (9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송전문경영인, 사외이사, 감사제도 강화 등 재허가 조건을 강화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다액출자의 대표이사 겸직, 최다액출자 경영 참여(소액주주 보호 방안), 대표이사 1년 임기 등의 문제는 개선할 필요 ○ 과도한 배당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소액주주와 최다액출자의 차등 배당 방안과 배당 성향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방안 검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KNN 35.3%, 대구 29.4%, 전주 31.9%, 제주 18.2%), '12년(울산 33.7%, 전주 54.3%, G1 37.5%, 제주 22.8%) ○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 유보금을 위험성 자산에 투자할 경우 방송사의

구분	주요 내용
지역민방 (9개사)	<p>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해야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방송 주식 - 37억 손실, 울산방송 펀드 - 19억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 포함)와 방송사(자회사 포함)간의 내부 거래 금지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방송 : KBC플러스가 최대주주(호반건설) 연관사업 추진 - 전주방송 : 최대주주 자회사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전환사채 50억원 매입 - G1 : 강촌레일파크(최대주주 자회사) 자본금 4.9억 투자 및 최다액 출자자 대양과 120억 연대 지급 보증 ○ 자사뉴스 등 프로그램을 통한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 관련 방송이 있어 간접광고에 해당되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집중 모니터링 요청을 할 필요 ○ 최대주주와 방송전문경영인이 각자 대표이사로 있는 KNN, 대전방송, 청주방송, G1은 대표자 변경신고를 의무도록 할 필요(1인만 신고)
종교방송 (5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종교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운영이 우선되고 기부금·출자금 등을 통한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향후 지상파방송 재허가시 지상파방송사업의 재무구조 파악을 위해 지상파방송과 PP에 대한 회계분리 검토가 필요 ○ 재단법인의 형태를 지닌 종교방송사의 경우 자회사 투자 등 상속 세법상의 감사기준 및 기부금 등에 대한 관련 법률 준수가 필요 ○ 종교방송의 경우 선교목적에 맞는 전문편성의무를 준수하고 종교 방송의 보도 허용 문제는 종교방송의 선교기능, 언론으로서의 역할, 보도 허용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 및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임 ○ 재단법인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가 강제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불교방송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므로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며 자금 및 영업현황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이 필요 ○ 원음방송의 경우, 종교재단에 대하여 한 장기 대여금 18억원에 대한 회수계획과 이행상황 검토가 요구됨 ○ 기독교방송의 경우, 12년말 단기차입금 207억원에 대한 상환계획,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 증자, 자금 대여 금지, 기지급한 대여금 회수 계획 마련이 필요

구분	주요 내용
라디오방송 (2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TN라디오의 경우, 재무구조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이벤트 행사가 주된 수익사업으로 향후 6개월 및 1년을 주기로 영업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조건 부과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분리가 필요 ○ 경기방송의 경우, 경기도청·지자체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 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위촉하는 조건 부과 필요 - 최다액출자자 (주)호주건설에 대해 방송법 제8조의 소유제한 규정을 준수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획홍보 담당자의 보도국장 겹직을 시정할 필요

3. 주요 쟁점사항

가. 허가유효기간

- 유료방송과의 경쟁 심화, 광고 등 방송사업 매출 감소로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전파법령상 허용 한도인 최대 유효기간(5년)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유효기간을 연장(3년→5년)한 입법취지 ('10년 7월)와 심사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와 미흡 사업자간 변별력 등은 고려할 필요
- 국내 방송환경 변화 상황을 고려하되 지상파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방통위가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10년도 재허가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심사점수에 따라 750점 이상 5년, 700점 이상 750점 미만 4년, 700점 미만 3년으로 부과

나. OBS경인TV 관련

-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평가기준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의 경우 위의 심사의견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조건부 재허가를 건의함
 - 또한, 최초 허가시 약속한 사옥 이전(인천) 관련 사항, 최다액출자자의 국회 중언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이행각서)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

<OBS경인TV 조건부 재허가(안)>

-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각서, 투자 의향서 등을 '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
-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14년 1월 말까지 수립·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을 '14년 2월부터 계획완료시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조건부 재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사업자(민영방송) 공통조건 및 권고 사항 부과

다. '10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관련

- (지역제작비 투자 조건) '12년도에 방송제작비 관련 회계규정이 개정 (직접제작비→간접제작비)되고 제작비 산정 내역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신뢰도가 낮음
 - '12년도의 경우 (주)청주MBC 8.45%, (주)충주MBC 7.13%, (주)KNN 10.05%, (주)제주방송 9.10%로 방통위 제시기준을 위반하였으나,
 - 일부 사업자의 경우 '10년도에 비해 그 증가 폭이 매우 높아 추가적인 회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주)대구방송(7.86% → 24.78%), (주)광주방송(11.32% → 19.11%), (주)대전방송 (15.06%→19.97%), (주)제주MBC(13.07%→20.43%), (주)MBC경남(5.50%→12.82%) 등

- 방송제작비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가 폭이 매우 큰 사업자에 대한 회계검증 실시 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향후 프로그램 제작비 자료는 방통위가 관련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방송의 기타 방송사업 수익, 기타 사업 수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작비 비율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 o (과도한 배당) '11년, '12년 연속으로 전체산업 평균 배당 수준('12년 17.2%)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작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 (주)SBS(23.6%,37.9%), (주)전주방송(31.9%,54.3%), (주)제주방송(18.2%,22.8%)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

라. 기타사항

- o (대표자 변경신고) 최대주주와 방송전문경영인이 각자 대표이사로 있는 (주)KNN, (주)대전방송, (주)청주방송, (주)G1은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1인만 신고)하였으나,
- 대표자 1인에 대해서는 방송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 대표자 변경일이 상당기간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보다는 엄중경고하고 변경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지역민방의 최다액출자자관련 보도) 심사결과 자사뉴스 등 프로그램 통한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 포함)관련 보도 등을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간접광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요청할 필요

- o (종교방송의 보도편성) 종교방송의 보도 허용 문제는 종교방송의 언론으로서의 역할, 보도 허용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일반PP의 유사보도 현황 및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향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

가. 재허가 조건(안)

o 공통사항

대상방송사	재허가 조건
KBS지역국 지역MBC(18개) 지역민방(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비율 이상('13년 KBS 3%, 지역MBC 10%, 지역민방 14%)으로 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종합편성방송 보도전문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 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SBS 지역민방(9개) (주)경기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 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 방송사업자

대상방송사	재허가 조건
한국방송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효율화 계획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확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고려하여 수립한 경영계획서를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법 제5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34조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내역을 이사회 결의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2년도 재허가시 확정한 KBS경인제1TV의 자체 프로그램 편성·제작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문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14년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열회사와의 SBS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콘텐츠 제작·판매에 대한 거래내역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 후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2007년도 변경허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시 제출한 이행각서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

대상방송사	재허가 조건
(주)MBC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경남지역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 계획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청주문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안동문화방송 (주)제주문화방송 (주)청주문화방송 (주)충주문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효율성 제고 등 경영 합리화 방안 및 자체 제작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G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유보금 규모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재)불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이외의 재원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 작성관련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해소 계획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재)원음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이외의 재원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종교재단에 대하여 한 장기 대여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리 등 안정성 확보 방안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대상방송사	재허가 조건
(주)경기방송	○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겹직 등 인사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최다액출자자(주)호주건설은 방송법 제8조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이행각서를 재허가 이후 1개월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할 것

나. 권고사항(안)

○ 공통사항

대상방송사	권고사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광고, 협찬 등 심의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율 심의를 강화할 것 ○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할 것 ○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 유형 분석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안정적 방송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방송사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UHD TV·디지털라디오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산 방송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및 활용 방안 등을 강화할 것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산업 발전 및 방송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중소방송 등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대상방송사	권고사항
(주)SBS 지역MBC(18개) 지역민방(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효율성 제고와 자체제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안동·청주·충주·제주MBC 제외) ○ 지역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수렴 및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MBC(18개) (주)KNN (주)광주방송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제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유보금 규모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할 것
지역민방(9개) (주)경기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특수 관계자 포함)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할 것 ○ 대표이사간의 권한 범위를 제도화하고,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이 책임 경영 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주)광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 경영 실현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임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종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재산 처분, 기부금 집행 및 회계감사기준 등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TV 방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 ○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이상 시청자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용할 것

o 방송사업자

대상방송사	권고사항
한국방송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료 인상시 경영 합리화,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수신료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 KBS 지역국(경인센터 포함)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주)문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MBC로부터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주)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가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주)MBC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경남 지역 행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주)경기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협찬 및 지자체 광고 운영 등을 지양할 것
(주)YTN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와 편성 책임자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 ○ 행사 사업 중심의 수익 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재)기독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 상환, 자회사와의 자금 거래 지양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재)평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이외의 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5. 정책 건의사항

가. 재허가 자료 검증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 철저 필요

- 재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재허가 심사 자료의 사전 검증 절차가 필요
- 재허가시 제출한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방송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재허가 심사기준 및 제출 자료 개선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미래 대응 전략 및 공정경쟁 시책 등에 관한 심사평가기준을 개발·반영하고,
 -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방송사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을 분리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지주회사 체제에서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의 수익·비용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전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
- PP를 운영하고 있는 종교방송의 경우, 정확한 재무구조 분석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회계를 분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다. 재허가 제도 개선

- 방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하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현행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의 적정성,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
- 방통위의 이사 선임, 국회의 국정감사와 예결산 승인 등을 받고 있는 KBS와 EBS에 대해서는 재허가 보다는 무선국에 대한 기술심사와 방송국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임
-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령상 허가유효기간을 세분화(예 1년~5년)하거나 조건부 재허가시 임시허가 부여 그리고 재허가를 거부할 경우 대상 방송시설의 양도 등에 관한 후속 조치 사항 등 종합적인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6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재허가 평가	합계
1	한국방송공사	KBS 제1DTV방송국	338.21	384.30	722.51
2	한국방송공사	KBS 제2DTV방송국	323.71	391.40	715.11
3	한국방송공사	KBS 제1AM방송국	327.72	390.20	717.92
4	한국방송공사	KBS 제2AM방송국	306.99	403.20	710.19
5	한국방송공사	KBS 제1표준FM방송국	327.72	390.20	717.92
6	한국방송공사	KBS 제2표준FM방송국	306.99	403.20	710.19
7	한국방송공사	KBS 제1FM방송국	306.79	402.00	708.79
8	한국방송공사	KBS 제2FM방송국	306.99	401.70	708.69
9	한국방송공사	KBS경인제1DTV방송국	325.34	380.60	705.94
10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제1AM방송국		438.90	731.50
11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제2AM방송국		438.90	731.50
12	한국방송공사	KBS 사랑의소리AM방송국		438.50	730.83
13	한국방송공사	KBS (김제)국제방송		430.20	717.00
14	한국방송공사	KBS 국군FM방송국		431.60	719.33
15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DTV방송국	338.43	383.70	722.14
16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2DTV방송국	322.15	391.70	713.85
17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AM방송국	323.99	390.10	714.09
18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표준FM방송국	323.99	390.10	714.09
19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2표준FM방송국	305.62	398.20	703.82
20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FM방송국	305.80	403.90	709.70
21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DTV방송국	338.37	383.10	721.47
22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2DTV방송국	324.00	389.70	713.70
23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AM방송국	319.09	388.30	707.39
24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표준FM방송국	319.09	388.30	707.39
25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2표준FM방송국	307.22	399.30	706.52
26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FM방송국	307.22	399.30	706.52
27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DTV방송국	335.85	383.90	719.75
28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DTV방송국	322.11	391.20	713.32
29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AM방송국	328.50	389.20	717.70
30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AM방송국	308.39	400.00	708.39
31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표준FM방송국	328.50	389.20	717.70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재허가 평가	합계
32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표준FM방송국	308.39	400.00	708.39
33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FM방송국	306.39	400.00	706.39
34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DTV방송국	341.23	379.60	720.83
35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2DTV방송국	324.27	390.60	714.87
36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AM방송국	327.92	392.10	720.02
37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표준FM방송국	327.92	392.10	720.02
38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2표준FM방송국	307.22	400.00	707.22
39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FM방송국	313.39	400.00	713.39
40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DTV방송국	337.45	382.10	719.55
41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2DTV방송국	322.16	389.60	711.76
42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AM방송국	328.92	388.00	716.92
43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표준FM방송국	328.92	388.00	716.92
44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2표준FM방송국	307.22	398.70	705.92
45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FM방송국	305.80	398.70	704.50
46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DTV방송국	338.15	384.00	722.15
47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2DTV방송국	321.80	391.20	713.00
48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AM방송국	326.92	389.10	716.02
49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표준FM방송국	326.92	389.10	716.02
50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2표준FM방송국	307.22	398.50	705.72
51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FM방송국	305.80	399.30	705.10
52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DTV방송국	334.97	382.20	717.17
53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2DTV방송국	322.11	389.70	711.82
54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AM방송국	329.50	387.10	716.60
55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표준FM방송국	329.50	387.10	716.60
56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2표준FM방송국	307.22	398.30	705.52
57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FM방송국	306.39	399.20	705.59
58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DTV방송국	333.87	383.50	717.37
59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2DTV방송국	321.90	389.70	711.60
60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AM방송국	325.52	388.40	713.92
61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표준FM방송국	325.52	388.40	713.92
62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2표준FM방송국	307.22	398.70	705.92
63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FM방송국	302.62	400.80	703.42
64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DTV방송국	339.25	382.30	721.55
65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2DTV방송국	323.74	389.60	713.34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재허가 평가	합계
66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AM방송국	328.09	387.90	715.99
67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표준FM방송국	328.09	387.90	715.99
68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2표준FM방송국	307.22	398.10	705.32
69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FM방송국	306.39	398.70	705.09
70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DTV방송국	337.85	382.00	719.85
71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2DTV방송국	321.67	389.60	711.28
72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AM방송국	322.66	387.90	710.56
73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표준FM방송국	322.66	387.90	710.56
74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FM방송국	296.95	404.00	700.95
75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DTV방송국	334.30	382.00	716.30
76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AM방송국	317.84	388.20	706.04
77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표준FM방송국	317.84	388.20	706.04
78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FM방송국	304.20	400.50	704.70
79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제1DTV방송국	334.93	384.30	719.23
80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 1AM방송국	324.60	388.80	713.40
81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제1표준FM방송국	324.60	388.80	713.40
82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제1DTV방송국	335.30	382.40	717.70
83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 1AM방송국	323.49	391.10	714.59
84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제1표준FM방송국	323.49	391.10	714.59
85	한국방송공사	KBS 울릉1AM방송국	320.82	387.90	708.72
86	한국방송공사	KBS 울릉제1표준FM방송국	320.82	387.90	708.72
87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DTV방송국	339.58	379.50	719.08
88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AM방송국	323.95	387.10	711.06
89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표준FM방송국	323.95	387.10	711.06
90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FM방송국	299.38	400.70	700.08
91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DTV방송국	337.58	384.90	722.48
92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AM방송국	323.95	388.80	712.76
93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표준FM방송국	323.95	388.80	712.76
94	한국방송공사	KBS 총주제1DTV방송국	335.67	381.50	717.17
95	한국방송공사	KBS 총주제1AM방송국	321.27	387.90	709.17
96	한국방송공사	KBS 총주제1표준FM방송국	321.27	387.90	709.17
97	한국방송공사	KBS 총주FM방송국	300.03	400.60	700.63
98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DTV방송국	330.18	384.40	714.58
99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2DTV방송국	318.35	392.00	710.35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재허가 평가	합계
100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AM방송국	321.73	392.50	714.23
101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표준FM방송국	321.73	392.50	714.23
102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FM방송국	299.38	401.50	700.88
103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DTV방송국	330.55	382.30	712.85
104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AM방송국	319.95	387.90	707.86
105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표준FM방송국	319.95	387.90	707.86
106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FM방송국	297.60	404.00	701.60
107	한국방송공사	KBS제3표준FM방송국		438.50	730.83
108	한국방송공사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436.50	727.50
109	(주)문화방송	MBC DTV 방송국	305.07	405.10	710.17
110	(주)문화방송	MBC AM방송국	316.22	406.20	722.42
111	(주)문화방송	MBC 표준FM방송국	316.22	406.20	722.42
112	(주)문화방송	MBC FM방송국	316.02	406.70	722.72
113	강릉MBC	강릉MBC DTV방송국	312.82	371.60	684.42
114	강릉MBC	강릉MBC AM방송국	314.68	378.80	693.48
115	강릉MBC	강릉MBC 표준FM방송국	314.68	378.80	693.48
116	강릉MBC	강릉MBCFM방송국	318.68	378.80	697.48
117	광주MBC	광주MBC DTV방송국	311.22	366.80	678.02
118	광주MBC	광주MBC AM방송국	306.54	375.20	681.74
119	광주MBC	광주MBC 표준FM방송국	306.54	375.20	681.74
120	광주MBC	광주MBC FM방송국	303.94	375.20	679.14
121	대구MBC	대구MBC DTV방송국	307.87	374.10	681.97
122	대구MBC	대구MBC AM방송국	291.32	379.60	670.92
123	대구MBC	대구MBC 표준 FM방송국	291.32	379.60	670.92
124	대구MBC	대구MBC FM방송국	295.72	379.60	675.32
125	대전MBC	대전MBC DTV방송국	328.64	374.20	702.84
126	대전MBC	대전MBC AM방송국	318.63	381.50	700.13
127	대전MBC	대전MBC 표준FM방송국	318.63	381.50	700.13
128	대전MBC	대전MBC FM방송국	323.03	381.50	704.53
129	MBC경남	MBC경남 창원DTV방송국	308.87	395.50	704.37
130	MBC경남	MBC경남 창원AM방송국	308.24	400.00	708.24
131	MBC경남	MBC경남 창원표준FM방송국	308.24	400.00	708.24
132	MBC경남	MBC경남 창원FM방송국	312.64	398.80	711.44
133	MBC경남	MBC경남 진주DTV방송국	307.29	397.30	704.59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재허가 평가	합계
134	MBC경남	MBC경남 진주AM방송국	310.57	402.10	712.67
135	MBC경남	MBC경남 진주표준FM방송국	310.57	402.10	712.67
136	MBC경남	MBC경남 진주FM방송국	314.97	399.30	714.27
137	목포MBC	목포MBC DTV방송국	298.42	374.40	672.82
138	목포MBC	목포MBC AM방송국	298.87	378.00	676.87
139	목포MBC	목포MBC 표준FM방송국	298.87	378.00	676.87
140	목포MBC	목포MBC FM방송국	304.27	378.50	682.77
141	부산MBC	부산MBC DTV방송국	315.08	388.40	703.48
142	부산MBC	부산MBC AM방송국	312.72	389.70	702.42
143	부산MBC	부산MBC 표준FM 방송국	312.72	389.70	702.42
144	부산MBC	부산MBC FM방송국	316.12	388.50	704.62
145	삼척MBC	삼척MBC DTV방송국	300.10	371.30	671.39
146	삼척MBC	삼척MBC AM방송국	294.46	374.90	669.36
147	삼척MBC	삼척MBC 표준FM방송국	294.46	374.90	669.36
148	삼척MBC	삼척MBC FM방송국	303.86	374.80	678.66
149	안동MBC	안동MBC DTV방송국	300.47	357.60	658.07
150	안동MBC	안동MBC AM방송국	290.74	365.40	656.14
151	안동MBC	안동MBC 표준FM방송국	290.74	365.40	656.14
152	안동MBC	안동MBC FM방송국	295.14	364.20	659.34
153	여수MBC	여수MBC DTV방송국	314.04	362.00	676.04
154	여수MBC	여수MBC AM방송국	308.58	366.90	675.48
155	여수MBC	여수MBC 표준FM방송국	308.58	366.90	675.48
156	여수MBC	여수MBC FM방송국	310.98	366.90	677.88
157	울산MBC	울산MBC DTV방송국	305.21	364.90	670.11
158	울산MBC	울산MBC AM방송국	307.39	367.30	674.69
159	울산MBC	울산MBC 표준FM방송국	307.39	367.30	674.69
160	울산MBC	울산MBC FM방송국	309.47	367.60	677.07
161	원주MBC	원주MBC DTV방송국	311.42	361.60	673.02
162	원주MBC	원주MBC AM방송국	303.10	368.50	671.60
163	원주MBC	원주MBC 표준FM방송국	303.10	368.50	671.60
164	원주MBC	원주MBC FM방송국	307.50	367.90	675.40
165	전주MBC	전주MBC DTV방송국	308.43	372.60	681.03
166	전주MBC	전주MBC AM방송국	295.86	379.50	675.36
167	전주MBC	전주MBC 표준FM방송국	295.86	379.50	675.36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재허가 평가	합계
168	전주MBC	전주MBC FM방송국	298.93	378.90	677.82
169	제주MBC	제주MBC DTV방송국	307.28	351.50	658.78
170	제주MBC	제주MBC AM방송국	284.04	366.60	650.64
171	제주MBC	제주MBC 표준FM방송국	284.04	366.60	650.64
172	제주MBC	제주MBC FM방송국	293.43	365.10	658.53
173	청주MBC	청주MBC DTV방송국	296.07	369.70	665.77
174	청주MBC	청주MBC AM방송국	279.78	376.90	656.68
175	청주MBC	청주MBC 표준FM방송국	279.78	376.90	656.68
176	청주MBC	청주MBC FM방송국	283.98	377.30	661.28
177	춘천MBC	춘천MBC DTV방송국	314.02	373.20	687.22
178	춘천MBC	춘천MBC AM방송국	315.47	379.30	694.77
179	춘천MBC	춘천MBC 표준FM 방송국	315.47	376.90	692.37
180	춘천MBC	춘천MBC FM 방송국	324.87	373.40	698.27
181	충주MBC	충주MBC DTV방송국	277.83	375.40	653.23
182	충주MBC	충주MBC AM방송국	273.54	381.60	655.14
183	충주MBC	충주MBC 표준FM방송국	273.54	380.40	653.94
184	충주MBC	충주MBC FM방송국	277.94	380.80	658.74
185	포항MBC	포항MBC DTV방송국	301.40	373.80	675.20
186	포항MBC	포항MBC AM방송국	305.47	380.30	685.77
187	포항MBC	포항MBC 표준FM방송국	305.47	380.30	685.77
188	포항MBC	포항MBC FM방송국	309.87	380.30	690.17
189	(주)SBS	SBSDTV방송국	311.94	400.50	712.44
190	(주)SBS	SBSAM방송국	326.00	403.90	729.90
191	(주)SBS	SBS표준FM방송국	326.00	403.90	729.90
192	(주)SBS	SBSFM방송국	339.60	395.90	735.50
193	(주)KNN	KNNDTV방송국	314.88	388.80	703.68
194	(주)KNN	KNNFM방송국	343.20	390.90	734.10
195	(주)대구방송	대구방송DTV방송국	324.95	367.50	692.45
196	(주)대구방송	대구방송FM방송국	328.38	369.70	698.08
197	(주)광주방송	광주방송DTV방송국	316.26	368.10	684.36
198	(주)광주방송	광주방송FM방송국	318.47	375.00	693.47
199	(주)대전방송	대전방송DTV방송국	322.37	377.80	700.17
200	(주)대전방송	대전방송FM방송국	328.87	383.40	712.28
201	(주)울산방송	울산방송DTV방송국	322.33	343.50	665.83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재허가 평가	합계
202	(주)울산방송	울산방송FM방송국	326.85	340.50	667.34
203	(주)전주방송	전주방송DTV방송국	317.28	345.60	662.88
204	(주)전주방송	전주방송FM방송국	316.65	351.00	667.65
205	(주)청주방송	청주방송DTV방송국	317.89	345.20	663.09
206	(주)청주방송	청주방송FM방송국	312.86	351.80	664.66
207	(주)G1	G1DTV지상파방송국	310.63	351.00	661.63
208	(주)G1	G1FM지상파방송국	308.11	353.60	661.71
209	(주)제주방송	제주방송DTV방송국	340.22	349.20	689.42
210	(주)제주방송	제주방송FM 방송국	339.12	355.50	694.62
211	(주)OBS경인TV	OBS경인DTV방송국	317.97	316.90	634.87
212	(주)경기방송	(주)경기방송	293.79	356.50	650.29
213	(재)극동방송	극동AM방송국	304.22	380.90	685.12
214	(재)극동방송	극동제주AM방송국	295.64	382.30	677.94
215	(재)극동방송	극동표준FM방송국	304.22	380.90	685.12
216	(재)극동방송	극동강릉FM방송국	295.64	382.30	677.94
217	(재)극동방송	극동대구FM방송국	293.88	382.30	676.19
218	(재)극동방송	극동대전FM방송국	295.64	381.70	677.34
219	(재)극동방송	극동창원FM방송국	297.97	380.20	678.17
220	(재)극동방송	극동목포FM방송국	295.64	381.40	677.04
221	(재)극동방송	극동포항FM방송국	296.22	380.20	676.42
222	(재)극동방송	극동울산FM방송국	295.64	380.20	675.84
223	(재)극동방송	극동부산FM방송국	297.97	379.00	676.97
224	(재)기독교방송	CBSAM방송국	323.76	362.40	686.16
225	(재)기독교방송	CBS대구AM방송국	314.31	362.00	676.31
226	(재)기독교방송	CBS부산AM방송국	314.49	362.50	676.99
227	(재)기독교방송	CBS광주AM방송국	311.98	363.10	675.08
228	(재)기독교방송	CBS전주AM방송국	320.29	362.70	682.99
229	(재)기독교방송	CBS표준FM방송국	323.76	362.40	686.16
230	(재)기독교방송	CBS대구표준FM방송국	314.31	362.00	676.31
231	(재)기독교방송	CBS부산표준FM방송국	314.49	362.50	676.99
232	(재)기독교방송	CBS광주표준FM방송국	311.98	363.10	675.08
233	(재)기독교방송	CBS전주표준FM방송국	320.29	362.70	682.99
234	(재)기독교방송	CBSFM 방송국	317.89	362.00	679.89
235	(재)기독교방송	CBS부산FM 방송국	314.76	362.50	677.26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방송 평가	재허가 평가	합계
236	(재)기독교방송	CBS청주FM방송국	309.98	362.70	672.68
237	(재)기독교방송	CBS춘천FM방송국	307.06	362.60	669.66
238	(재)기독교방송	CBS대전FM방송국	309.97	362.60	672.58
239	(재)기독교방송	CBS포항FM방송국	310.58	362.80	673.38
240	(재)기독교방송	CBS마산FM방송국	312.89	362.50	675.39
241	(재)기독교방송	CBS제주FM방송국	315.91	362.50	678.41
242	(재)기독교방송	CBS강릉FM방송국	312.89	362.10	674.99
243	(재)기독교방송	CBS순천FM방송국	311.57	361.90	673.48
244	(재)기독교방송	CBS울산FM방송국	309.98	362.50	672.48
245	(재)불교방송	불교FM방송국	298.61	361.70	660.31
246	(재)불교방송	불교부산FM방송국	288.03	362.60	650.63
247	(재)불교방송	불교광주FM방송국	288.43	362.00	650.43
248	(재)불교방송	불교대구FM방송국	290.03	361.90	651.93
249	(재)불교방송	불교청주FM방송국	288.43	362.20	650.63
250	(재)불교방송	불교춘천FM방송국	288.03	362.20	650.23
251	(재)불교방송	불교울산FM방송국	290.03	361.30	651.33
252	(재)원음방송	원음서울FM방송국	308.51	352.00	660.51
253	(재)원음방송	원음익산FM방송국	312.83	352.00	664.83
254	(재)원음방송	원음부산FM방송국	310.49	349.60	660.09
255	(재)원음방송	원음광주FM방송국	315.16	352.00	667.16
256	(재)원음방송	원음대구FM방송국	309.11	352.00	661.11
257	(재)평화방송	평화FM방송국	309.34	376.90	686.24
258	(재)평화방송	평화광주FM방송국	308.34	376.00	684.34
259	(재)평화방송	평화대구FM방송국	309.68	375.70	685.38
260	(재)평화방송	평화부산FM방송국	307.34	375.70	683.04
261	(재)평화방송	평화대전FM방송국	307.34	374.20	681.54
262	YTN라디오	YTNFM 방송국	303.33	367.50	670.83

VI. 방송국 기술심사

1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 전파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부에 기술심사 의뢰와 함께 재허가 기술심사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송부

※ 관련 문서

-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868(2013.8.6,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기술심사 의뢰)

【재허가 기술심사 의뢰 서류】

제출 서류	제출여부
1.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각 1부	○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각 1부	○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첨부서류 포함) 각 1부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 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 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공중선계 구성약도 (6) 송신 공중선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 감시장치 계통도	○ ○ ○ ○ ○ ○ ○ ○
4. 시설설치계획서 각 1부	○

2

주요 심사 내용

1. 방송국 재허가 기술심사 사항 적합 여부(전파법 제34조)

심사 항 목	심사 결과
○ 주파수지정 가능성	○ 기 허가받아 사용하는 채널로 지속적으로 주파수 지정 가능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 각 매체별 기술기준에 적합 - 최초 허가 후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적합성	○ 전파법 제71조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

2. 방송국 개설조건 적합성 여부(전파법 제35조)

심사 항 목	심사 결과
○ 다른 방송국과 혼신발생 여부	○ 주변 다른 방송국의 주파수 배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방송국의 수신에 혼신발생 가능성 낮음

3.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 개설조건 적합성(전파시행령 제56조)

심사 항 목	심사 결과
○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 에어리어 내 가구수 충족 조건	○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정 설치장소에 적합 (기 허가 받아 운영중)
○ 송신공중선 위치 적합 여부	○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충족 -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지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됨 (기 허가 받아 운영중)
○ 다른 방송국의 송신 공중선의 설치장소에의 접근장소 여부	○ 방송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타 방송국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하여 설치 운영중(기 허가 받아 운영중)

4.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적합성(전파시행령 제57조)

심사항목	심사결과
o 송신공중선 설치장소 적합성	o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 분포를 발생하고, 타 지역에의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위치에 설치 운영중
o 송신공중선 설치 높이, 실효 복사전력 및 지향특성	o 방송구역을 충분히 서비스하면서 불필요한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정 출력으로 운영중
o 다른 방송국의 송신 공중선의 설치장소에의 접근장소 여부	o 방송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타 방송국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하여 설치 운영중(기 허가 받아 운영중)

5.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전파시행령 제55조)

심사항목	심사결과
o 설립중인 법인의 확실성	o 설립중인 법인에 대한 조항으로 개설허가시 필요한 항목으로 해당사항 없음
o 연주소 시설 보유여부	o 지상파 방송용 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연주 시설을 보유함
o 시설설치계획의 합리성	o 각 방송국별 설치장소 선정 및 송신시설의 설치계획이 방송구역내에서 능률적인 전계 강도 분포를 발생할 수 있도록 작성됨
o 기술적 능력 보유여부	o 전파법 제71조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적정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중

3 심사결과

- o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o 허가시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허가증에 부관사항으로 명기 필요

<부관사항>

- ①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②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 ③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

VII.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1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13.12.9.)

1.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

- o 2013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고, 허가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이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한국방송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의결한다.

평가점수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
700점 이상 (8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o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o (주)대전MBC, (주)부산MBC, (주)MBC경남o (주)대전방송, (주)KNN	4년
650점 이상 ~ 700점 미만 (29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o (주)강릉MBC, (주)광주MBC, (주)대구MBC, (주)목포MBC, (주)삼척MBC, (주)안동MBC, (주)여수MBC, (주)울산MBC, (주)원주MBC, (주)전주MBC, (주)제주MBC, (주)청주MBC, (주)춘천MBC, (주)충주MBC, (주)포항MBCo (주)광주방송, (주)대구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청주방송, (주)G1o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평화방송o (주)경기방송, (주)YTN라디오	3년

2. (주)OBS경인TV

- o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기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함에 따라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주)OBS경인TV는 2013년 12월 20일까지 ①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 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②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 지원 관련 계획 및 이행각서, ③ 기타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재허가 조건

○ 공통사항

대상방송사	재허가 조건
KBS지역국 지역MBC(18개) 지역민방(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비율 이상('13년 KBS 3%, 지역MBC 10%, 지역민방 14%)으로 할 것. 프로그램 제작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종합편성방송 보도전문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 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SBS 지역민방(9개) (주)경기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 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 방송사업자별 조건

대상방송사	재허가 조건
한국방송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효율화 계획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확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고려하여 수립한 경영계획서를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법 제5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34조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이사회 결의사항 내역을 이사회 결의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12년도 재허가시 확정한 KBS경인제1TV의 자체 프로그램 편성·제작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문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14년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열회사와의 SBS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콘텐츠 제작·판매에 대한 거래내역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 후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2007년도 변경허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시 제출한 이행각서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

대상방송사	재허가 조건
(주)MBC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경남지역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 계획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청주문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안동문화방송 (주)제주문화방송 (주)청주문화방송 (주)충주문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효율성 제고 등 경영 합리화 방안 및 자체 제작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G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유보금 규모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주)광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 경영 실현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임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하고, '13년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재)불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이외의 재원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할 것 ○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 작성관련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해소 계획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대상방송사	재허가 조건
(재)원음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이외의 재원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종교재단에 대하여 한 장기 대여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리 등 안정성 확보 방안을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겹직 등 인사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재허가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최다액출자자(주)호주건설은 방송법 제8조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이행각서를 재허가 이후 1개월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 권고사항

○ 공통사항

대상방송사	권고사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광고, 협찬 등 심의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율 심의를 강화할 것 ○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할 것 ○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 유형 분석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안정적 방송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방송사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UHD TV·디지털라디오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산 방송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및 활용 방안 등을 강화할 것

대상방송사	권고사항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산업 발전 및 방송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중소방송 등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주)SBS 지역MBC(18개) 지역민방(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MBC(18개) 지역민방(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효율성 제고와 자체제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안동·청주·충주·제주MBC 제외) ○ 지역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수렴 및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MBC(18개) (주)KNN (주)광주방송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제주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유보금 규모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할 것
지역민방(9개) (주)경기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특수 관계자 포함)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할 것 ○ 대표이사간의 권한 범위를 제도화하고,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이 책임 경영 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종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재산 처분, 기부금 집행 및 회계감사기준 등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TV 방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 ○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이상 시청자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용할 것

- 방송사업자별 권고사항

2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13.12.27.)

대상방송사	권고사항
한국방송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료 인상시 경영 합리화,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시청자 권리 증진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수신료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 KBS 지역국(경인센터 포함)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자체제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주)문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MBC로부터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주)S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가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주)MBC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경남 지역 행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주)경기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협찬 및 지자체 광고 운영 등을 지양할 것
(주)YTN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와 편성 책임자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 ○ 행사 사업 중심의 수익 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재)기독교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 상환, 자회사와의 자금 거래 지양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재)평화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이외의 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OBS경인TV(주)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

OBS경인TV(주)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재허가 조건

구 분	재허가 조건
방송사업자 (개별사항)	<p>1. '13년 재허가시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중 '14년도 상반기 증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증자완료(주금 납입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0년도 재허가 조건 및 '12년 시정명령시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고려하여 향후 재무상황 등에 따른 추가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14년 상반기 종료 후 '14년 8월말까지 제출(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 첨부)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p>2. 유동성 확보를 위해 '15년부터 적정현금보유액은 '13년 재허가시 제출한 '14년말 현금보유액(87억원)이상을 유지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3.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2013년도 제작투자비(311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방송 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p> <p>4. 상기 조건이외에 '13년 재허가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및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콘텐츠 강화계획, 사옥이전 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5.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시 제출한 증자계획, 이행각서 내용,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p> <p>6. 최다액출자자는 당사자 관련 법원의 판결취지('12.10월)를 존중하여 방송사업자로서 사회적 신뢰와 공적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p>

구 分	재허가 조건
방송사업자 (공통사항)	<p>1.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 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2.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대표이사)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p> <p>3.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p> <p>4.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p> <p>5.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p> <p>6.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p>

2. 권고사항

구 分	권고사항
방송사업자 (공통사항)	<p>1. 간접광고, 협찬 등 심의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기구, 심의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율 심의를 강화할 것</p> <p>2.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할 것</p>

구 분	권고사항
	<p>3. 시청자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 유형 분석 등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p> <p>4. 안정적 방송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방송사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p> <p>5.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p> <p>6. UHD TV·디지털라디오 등 차세대 방송 준비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산 방송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및 활용 방안 등을 강화할 것</p> <p>7.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특수 관계자 포함)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할 것</p> <p>8. 대표이사간의 권한 범위를 제도화하고,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이 책임 경영 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p> <p>9.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p> <p>10.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 이상 시청자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영할 것</p>

VIII.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45호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법 제10조, 제17조제3항·제4항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2013. 12. 31.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심사결과

구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심사결과	허가유효기간
	TV	FM	표준FM	AM	합계		
한국방송공사	32	18	31	27	108	재허가	2017.12.31
(주)문화방송	1	1	1	1	4	재허가	2017.12.31
(주)SBS	1	1	1	1	4	재허가	2017.12.31
부산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7.12.31
대구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광주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대전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7.12.31
전주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주)MBC경남	2	2	2	2	8	재허가	2017.12.31
춘천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청주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제주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울산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목포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여수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안동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원주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구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심사결과	허가유효기간
	TV	FM	표준FM	AM	합계		
충주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삼척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포항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강릉문화방송(주)	1	1	1	1	4	재허가	2016.12.31
(주)KNN	1	1	–	–	2	재허가	2017.12.31
(주)대구방송	1	1	–	–	2	재허가	2016.12.31
(주)광주방송	1	1	–	–	2	재허가	2016.12.31
(주)대전방송	1	1	–	–	2	재허가	2017.12.31
(주)전주방송	1	1	–	–	2	재허가	2016.12.31
(주)청주방송	1	1	–	–	2	재허가	2016.12.31
(주)울산방송	1	1	–	–	2	재허가	2016.12.31
(주)G1	1	1	–	–	2	재허가	2016.12.31
(주)제주방송	1	1	–	–	2	재허가	2016.12.31
(주)경기방송	–	1	–	–	1	재허가	2016.12.31
(재)불교방송	–	7	–	–	7	재허가	2016.12.31
(재)평화방송	–	5	–	–	5	재허가	2016.12.31
(재)기독교방송	–	11	5	5	21	재허가	2016.12.31
(재)원음방송	–	5	–	–	5	재허가	2016.12.31
(재)극동방송	–	8	1	2	11	재허가	2016.12.31
(주)YTN라디오	–	1	–	–	1	재허가	2016.12.31
OBS경인TV(주)	1	–	–	–	1	증정부 재허가	2016.12.31
합 계	63	86	58	55	262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 (접수기간) 2013. 8. 5. ~ 8. 30, 4주간
-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접수결과) 총 100건
-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는 재허가심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하였음. 끝.

나.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3-20-050)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와 방송국은 보고드린 대로 '13년 12월 31일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총 38개사, 262개 방송국입니다. 구체적인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와 방송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표>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허가 심사의 중점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국 운영실적이나 향후 사업계획을 심사할 경우에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실현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자 권리가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심사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방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지상파방송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기준 보다 중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방송국 단위의 평가단위에서 방송사업자 단위로 심사 평가단위도 개선함으로써 심사절차의 합리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해서 재허가 제도 실효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확대해서 자료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능력과 의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나 최대주주 대상으로 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도 보다 강화해서 실시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방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통위원회 위원 또는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9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중점 방향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 전문성과 운영의 실효

IX.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수를 증원코자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심사위원 13인에 대한 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분야 심사위원 한 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의뢰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원칙입니다. 공익성과 시청자 보호 중점 심사와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 심사항목을 최대 배점 항목으로 유지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1,000점 만점에 150점의 최대 배점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도 유지코자 합니다. 시청자 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항목 배점을 75점에서 10점 상향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금번 심사에서는 채널 특성을 고려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률적인 심사기준 적용으로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영·민영, 종합·전문편성사업자에 대한 평가요소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평가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평가가 40%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평가는 주로 운영실적 위주의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유효기간도 연장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실적 부분은 방송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허가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과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명확히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심사코자 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미래 대응전략이나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융합 등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방송사가 서비스 다양화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이해관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방송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송발전 지원계획이나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으로 평가코자 합니다. 심사항목과 배점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허가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심사항목 구조는 유지하되, 심사 기본원칙에서 보고 드린 중점사항을 반영해서 배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세부심사기준과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안)'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특징적인 몇 부분만 보고 드리면 세 번째 프로그램 편성·제작이 지금까지 2010년도 배점이 50점이었습니다만 편성과 제작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25점을 상향코자 합니다. 또한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부분도 15점 상향 조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부분도 10점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기타사항의 디지털 전환부분은 지상파의 아날로그 종료가 이루어졌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평가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서 그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나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5월 말에 재허가 신청을 권고토록 하고, 6월 말에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10월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다음에 11월 중에 재허가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번에 하고 나면 3년 뒤 또는 5년 뒤에 해야 하니까 이번 심사과정에 있어서 조건부 권고 사항이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을 주든 현재 법정 최대 한도인 5년을 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조건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체크할 영역,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체크할 영역을 명확하게 중간 검토기간을 정확하게 주고 조건부 권고사항들을 5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영역보다도 국산장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되지도 않는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않습니까? 국산장비를 사용하면 A/S가 어렵다는 등, 고장이 자주 난다는 등, 그런데 각종 국산장비 전시회, 최근에 있었던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에 가보면 한 번도 국산장비를 넣은 회사에서 어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국산장비에 대한 사용자들의 외산장비 선호를 엉뚱하게 국산장비의 퀄리티 문제로 변환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원칙이나 기본방향, 이 중에 국산장비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국산장비 설치율, 그다음에 구입률을 명확하게 평가하고 두 번째 사업계획에 국산장비 확대비율을 명확하게 해서 2가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받아서 국산장비와 관련된 지원책들을 아주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산장비 활용과 관련해서 재허가를 제외하고 국산장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국산장비를 이번에 가장 큰 화두로 잡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이나 심사의 기본방향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산장비 활용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보완 입법하시라, 예전의 IPTV나 그다음에 서대구케이블방송, 우리가 재허가 거부를 했을 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부에서도 고발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력도 없고, 그러면서 재허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다음에 재허가를 통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완 입법해서 재허가를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 10년 연구했지 않습니까? 10년 연구했으면 이제는 좀 하시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중간 검토기간 명확화,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명확히 해서 반기 또는 1년 단위 점검사항 조건이나 권고 부분 충분히 확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장비 사용실적 이 부분도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명확히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술적 능력이나 방송발전 지원 계획의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재허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재허가가 거부됐을 때의 후속조치에 대한 입법,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체적인 입법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준비된 안을 조만간 보고 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발 조만간이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내는 조만간이 안 되기를, 책임지고 하세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만들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무엇을 들고 와야 도와주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스케줄이 급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급하지도 않고 여유가 있지도 않은 정규적인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11번까지 쭉 점수 매겨진 <표>가 있지 않습니까? 10번에 보면 지난번에 할 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과제 비슷하게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책과제가 없이 그 점수를 다른데 배점한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하려면 3년, 5년 걸리는데 과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 5년 동안에 지상파에게 이것 하나 정도는 하게 하자, 이런 정책과제가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요. 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고민해 봤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이번에 중점 심사방향에 넣은 것 중 지상파의 대응전략에 사실은 중소방송이나 타 매체와의 상생방안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넣었고, 디지털 전환처럼 이렇게 특별한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50점 배점을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료방송이 아니고 지상파 방송이니까 혹시 우리가 앞으로 한 3년, 5년 중에 이것을 꼭 관찰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없을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타이밍이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제 저희가 이번 재허가 기본계획을 올려드린 것은 사업자가 6월 말까지는 재허가 신청을 내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할 테니까 여기 보면 공익성, 공공성, 방송평가, 프로그램 편성·제작 이런 것 해서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발전정책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철학을 만들어서 적어도 지상파라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점수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때 그런 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UHD 문제라든지 지금 늘 지상파와 관련해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언어순화이지 않습니까? ‘방송이 말을 다 버린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것이라도 하나 넣어서, 적어도 이번 재허가 기간 동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지상파방송들이 확실하게 해라,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점수 배점이나 아니면 세부 항목에 그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그것 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방향에도 <1>번에 시청자 권리 증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시청자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 3년, 5년이면 굉장히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10점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정 및 기술적 능력 15점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 적정성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청자 권리보호 쪽을 상당히 많

이 올려보면 어떨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정례적인 심사항목입니다. 전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확실한 계획을 내라, 이런 뜻에서 예를 들어 15점 위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있는 것을 이번에 25점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경영 적정성에서 좀 더 자세히 봐 주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것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능동적인 시청자 복지 세부사항이 필요합니다. 점수 배점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배점을 상향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세부 배점 부분을 별도의 특별 과제를 신설보다 세부 배점으로 하자는 말씀, 좋은 말씀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중점을 되는 부분이 세부 배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잘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나 기본원칙을 할 때 저희들이 기준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점적인 방향성에서 많은 것들을 메시지로 주고자 했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매체별로 구분해서 평가요소를 달리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적인 부분은 공·민영 또는 전문·종합편성 이런 매체별로 구분해서 전문화된 배점이 이 상단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이 하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시청자 권리 부분은 포괄적으로 공적인 요소 부분에 해당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단에, 특히 방송사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구태여 상단의 배점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기본방향 자체가 매체에 따라 평가요소를 차별적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적 능력 부분이 바로 배점을 어떻게 보면 앞에 재정을 많이 볼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강조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UHD나 차세대에 대한 방송의 준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방향에 환경 변화에 대한 미래의 대응 부분을 이런 기술적 평가를 통해 이제는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녹여서 반영하겠다니까 제가 양보하고, 다만 우리가 지상파 방송을 구분해서 공영방송, 민영방송 그 방송의 성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게 할 수 있는 철학이나 정책방향을 녹여서 차별화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김대희 상임위원

- 이번에 달라진 평가방향으로 향후 계획의지를 평가하겠다, 그다음에 미래 대응전략과 상생에 대해서 평가하겠다고 담은 부분은 전향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장비의 국산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담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방송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방송사 자체적으로 해서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정부가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의미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비 국산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새로운 시도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교한 심사기준을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여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심사위원 추천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을 의뢰하는 아이디어를 담아주셨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합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방송평가 400점과 나머지에 나오는 평가항목들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평가 중에서는 그 아래 내용들이 대개 방송평가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항목으로만 보면 위원장님 지적대로 중복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시했는데, 다만 방송평가 400점은 그 항목 가운데 지난해의 실적, 지금까지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실적이 담기는 것이고, 동일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프로그램 편성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심사계획상의 편성은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점 부분이 실적을 평가했기 때문에 나머지 600점은 향후 계획을 주로 많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금년에는 그동안 5년마다 재평가, 재허가를 받는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전면적으로 다시 재허가한다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방송환경이 5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의례적으로 과거에 하던 항목이나 기준으로만 봐서는 정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평가해서 정말 나오될 때와 또 발전될 때와 이런 것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방송계도 자극이 되고 또 새로운 경쟁의 의지를 갖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평가항목들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만들었겠지만 하여튼 심사할 때 아주

분명하게 방송계에 방통위의 의지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2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3.12.9.)

가.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3-43-162)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안)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고, 허가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이 심사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한국방송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의결한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주)대전MBC, (주)부산MBC, (주)MBC 경남, (주)대전방송, (주)KNN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4년으로, 그리고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주)강릉MBC, (주)광주MBC, (주)대구MBC, (주)목포MBC, (주)삼척MBC, (주)안동MBC, (주)여수MBC, (주)울산MBC, (주)원주MBC, (주)전주MBC, (주)제주MBC, (주)청주MBC, (주)춘천MBC, (주)충주MBC, (주)포항MBC, (주)광주방송, (주)대구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청주방송, (주)G1,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평화방송, (주)경기방송, (주)YTN라디오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후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운영은 지난 10월 22일~11월 26일까지 총 13일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점수는 앞에 의결주문(안)으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번 심사평가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허가 대상 사업자 전체에 대해 현장조사와 사업자 의견청취를 하는 등 실질 심사를 강화하고, 방송평가와의 중복, 방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적보다는 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리 증진 등 방통위가 지난번에 의결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KBS는 방송법령에 따른 공적책임, 민영방송은 경영 투명성, 지역방송은 경영 합리화와 지역성 구현,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과거 허가시 부여한 조건·권고사항의 이행실적과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수·미흡 평가사업자에 대해 조건과 권고사항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종합의견으로 방송환경 측면에서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의 매출점유율, 영업이익률, 광고매출 및 시청점유율 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매체·다채널 방송환경, 매체간 경쟁은 광고매출 감소 및 기타사업 매출 증가 등으로 지상파 매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고감소 등 매출구조 변화는 지역방송에서 심각하게 나타나 수익 다변화를 위해 비 방송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허가시 제출한 재정운영 등 사업계획 이행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방송제작 등 공적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송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0년도 재허가시에 부과한 디지털 전환 조건 등은 대체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지역 제작비 투자 및 협찬 규정 준수 등은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편성규약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해 방송법 제4조에 따른 편성규약의 공표 현황 및 편성위원회 운영 실적 등이 일부 미흡하였고, 프로그램의 안정적 송출 및 네트워크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송출장비와 내부 전산망 등 방송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방송사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앙 지상파 차원에서는 KBS는 적자구조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사업 이후 조직 안정화, SBS는 사회 환원 조건 유지 및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지역방송에서는 지역MBC는 금년 상반기 적자 전환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제고 필요, 본사 경영진의 이사 겸직 강화에 따른 독자 경영 저해 등이 지적됐습니다. 지역민방은 최다액출자자의 경영 개입, 방송전문경영인의 단기 임기 문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손실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정상화에 관한 최다액출자자의 의지 미흡 및 국회 위증 판결 문제, 사옥이전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종교방송은 광고 의존도가 높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부금 중심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방송은 재허가기간 중에 방송법령상 소유제한 위반 문제, 자체 광고 중심의 매출구조 개선 등이 지적됐습니다. 주요 쟁점별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허가유효기간에 대해 유료방송과의 경쟁 심화, 광고 등 매출 감소로 방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전파법령상 허용한도인 최대 유효기간 5년의 부과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입법취지, 심사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와 미흡 사업자간의 변별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내 방송환경 변화 상황을 고려하되 지상파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방통위가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기준인 650점 미만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의지 등을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예로 기타 제작비 투자의 경우 회계 검증 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년 연속 배당성향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작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조치하고 정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주)KNN, ^(주)대전방송, ^(주)청주방송, ^(주)G1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는 엄중 경고하고, 변경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민방의 최다액출자자 관련 보도 등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

므로 간접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종교방송의 보도 허용 문제는 언론으로서의 종교방송 역할, 사회적 파급 효과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재허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KBS, EBS의 경우에는 재허가보다는 무선국 기술심사와 방송국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허가유효기간을 세분화하고, 조건부 재허가시 임시허가 부여하는 방안, 재허가를 거부할 경우에 대상 방송시설의 양도 등 종합적인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허가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미래 대응 전략과 공정경쟁 시책 등에 관한 심사평가 기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재허가시 제출한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등은 매년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정확한 재무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의 방송사는 지주회사 전체의 연결재무제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하고 있는 종교방송은 회계분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심사결과입니다.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하되 무선국 혼신해소 등 일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5>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사평가 점수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차등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재허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해서 각 방송사업자별로 <붙임 1>과 같이 재허가 조건과 권리사항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확인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역제작비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하는 문제, 과도한 배당·대표자 변경신고 등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하고, 지역민방의 최다액출자자 보도 관련해서는 방심위에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등 사후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건의사항은 내년도 주요 업무과제에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바로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연말까지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고, 내년 이후 사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붙임>자료입니다. 재허가 조건 및 권리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일부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허가 조건입니다. 그중 공통사항입니다. KBS지역국과 지역MBC 18개사, 지역민방 9개사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통위가 제시한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에 대해서는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SBS와 지역민방 9개사,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시행토록 하고, TV방송사에 대해서는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

도록 하며, 전체 재허가 대상 방송사에 대해서는 무선국 혼신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외에 각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문화방송에 대해서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 합리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SBS에 대해서는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하고, 계열회사와의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기준을 현재보다는 확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BC경남에 대해서는 서부경남지역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청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안동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성 제고 등 경영 합리화 방안과 자체제작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 규모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며, (재)불교방송에 대해서는 광고 이외의 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원음방송에 대해서는 역시 광고이외의 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대여금에 대한 우선 번제권리 등 안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토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겹직 등 인사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재허가 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율심의를 강화토록 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강화하며, 시청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자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며, 난시청 해소와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여 시행코자 권고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방송준비를 위한 계획도 수립 시행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한국방송공사와 (주)문화방송과 (주)SBS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중소방송 등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SBS와 지역MBC 18개사, 지역민방 9개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을 지양토록 하는 등 권고사항을 보내고, 지역MBC 18개사, 지역민방 9개사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수렴 및 콘텐츠 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지역MBC 18개사, (주)KNN, (주)광주방송, (주)대구방송, (주)대전방송, (주)제주방송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 규모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는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민방 9개사와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토록 권고하며, (주)광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임기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TV 방송국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심야편성 운영시간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별로 부과하는 권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수신료 인상시 경영 합리화, 방송의 공익성 강화 및 시청자 권리 증진 등의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12년 폐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주)SBS에 대해서는 결합판매가 지역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주)MBC경남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

며, (주)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과도한 협찬 및 자체 광고 운영 등을 지양토록 하고, (주)YTN라디오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편성책임자를 분리하여 운영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재)기독교방송에 대해서는 자회사와의 자금 거래 지양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재)평화방송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은 700점 이상 8개사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주고,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29개사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주고, 650점 미만인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후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이런 큰 틀의 보고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OBS경인TV 측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은 별도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이번 지상파 재허가심사위원회 책임을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역 방송사의 사장에 대한 의견청취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재허가 심사하는지, 이벤트 회사 허가를 심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본유의 광고수익에 의한 정상적인 영업이 과탄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다각화, 사업 다각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지상파가 건설업, 임대업, 홍보회사, 여행사, 극장... 이런 것들을 겹영하고 실질적인 수입이 그런 데서 나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더 커져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과거에 지상파 100년 역사 동안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오던 기간 동안에는 방송 본유의 전파를 통해서 광고주도 획득하고 매출을 늘려서 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만, 지금은 본령이 무너지고 부업을 통해 자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업을 통한 악순환이 계속 되어 갈 것이라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경기방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협찬강요 말아라, 자체 운영 광고를 많이 뜯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권고사항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방송매출이 낮기 때문에 보도국을 활용한 편법 영업이 활개치고, 그것은 결국 방통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향후에도 각별히 방송사의 영업추이나 영업행태를 경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ITU 통계에서도 지상파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5년 사이에 10%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매체,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한 지상파의 쇠락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의주시하며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홍성규 위원님!

○ 홍성규 상임위원

- 여기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0점 이상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B그룹 중에서 보면 어떤 데는 650점 겨우 턱걸이로 650.29점, 650.64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99점, 698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3년에 해당이 되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달고 있지만 이 조건들은 지상파방송사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건이라는 말이 이상할 만큼 그런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번에 4년, 3년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한선을 5년으로 정하고 하한선을 3년으로 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하한선을 없애거나 아니면 하한선을 1년으로 해서 좀 더 변별력을 있게 해야 한다, 690점짜리와 650점짜리가 같은 것이냐,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의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냥 대충 하면 3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을 깨야 한다, 그래서 당장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허가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가제도 기간이 법상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단축할 수 있는 것은 2년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년은 다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또 다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유효기간을 1년도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또는 임시 허가제도를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록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5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방송법에서 정한 때는 방송은 무한이 발전할 것이다, 지역방송사는 아무리 많이 세워도 밥은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상파가 급락하는 시점에 맞추는 입법적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저는 작은 것, 앞에서 큰 것들을 건드렸으니까 작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지역민방은 최다액출자자의 경영개입, 방송전문 경영인의 단기 임기 및 위험자산투자에 대한 손실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주방송, 전주방송, 광주방송이 단기 임기라는 것이 사장의 임기가 1년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평균 3년인데 사장 임기가 1년이면,

그러면 이사들이 사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구성원들이 또 사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사장은 1년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수를 둘 것이고, 중장기 기본적인 계획들, 방송발전에서 최소한의 공공성, 이런 부분들은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으로까지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게 법적으로 일정한 쟁점이 되고 그리고 찬반 논란이 거의 1:1 수준이 되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건부로 옮겨서 강제이행케 하고, 그리고 그게 법적 다툼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지역민방 오너들의 탐욕들, 그리고 철저하게 방송사 자체를 자회사 개념으로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자신의 수주를 따내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조건부로 들어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법적 논란과 분쟁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뺏다면 차라리 그것을 조건부로 옮겨서 법적 논란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화를 만들고 그리고 여론을 향해서 지금 일부 지역민방의 오너들이 하는 행태들을 국민들 앞에 다 말씀드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현재 각 지역에 있어서 만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고 방송을 운영하고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MBC 경남, 이것을 서부경남지역 행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고사항에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경남MBC가 출범할 때 편성약속들 다 했고, 그리고 보도영역의 약속들을 다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미진하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서부경남지역의 많은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문제제기해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조건부로 앞쪽으로 당겨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할 것이 많으나 어쨌든 앞에서 큰 그림들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4년 내내 재허가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할 때 사무국에 요구했던 것이 재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재허가 거부를 했었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를 보호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되어야 재허기가 재허가답게 가는 것이고, 재허가를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 재허가의 기본적인 힘을 받을 것이고, 재허가의 법적 정신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KBS, MBC는 재허가 못 받으면 배제라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경영진과 이사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적 조건과 제도적 조건을 구비해 놓아야 공영방송도 정상적으로 긴장하면서 그 재허가에 대할 것

이고, 재허가를 준비하면서 놓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할 것이고, 그래서 재허가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사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전체 지상파가 아까 부위원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가만 받으면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주주와 경영진은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재허가 거부가 났었을 때의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 그 방송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청자에게 피해를 안 주는 한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법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적하신 재허가 거부 이후의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고 드렸듯이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때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경남 부분은 저희 조건으로 지역편성 계획 부분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한테 그 계획을 제출하고 점검받도록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지금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건으로 강화할 것인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일단 잠깐만요. 부위원장께서 심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장 임기 문제는 법적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이 아니라 재허가 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상의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 방송사의 다른 임원이나 감사는 전부 2년 이상인데 왜 하필 사장만 1년이냐, 너무 속 보이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사장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President라는 것은 맨 앞에 앉는 사람이고, 상석에 앉는 사람이고 사령관인데 사령관만 1년짜리로 놓고 운영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것은 방송의 공적 운영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소유와 경영 분리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어서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이 아주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영업 일선에 앞세워 뭐라고 할까, 좀 학적으로 메뚜기처럼 이렇게 날뛰게 만드는 그런 오너들의 심리를 충분히 심사위원회에서도 깨뚫어보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2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되어 있는 바대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더라도 3사에 대해서 방통위가 무겁게 권고로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고쳐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재허가 조건 못지않은 무게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위원회의 결의로 비록 당사자인 오너들은 사적(私的) 자치(自治) 등등의 논리로서 대항할지 모르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재허가 조건으로 상식에 반하는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OBS 건에 관해서 의견청취할 수 있도록….

○ 양문석 상임위원

-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결을….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은 나중에 다 듣고 나서….

○ 양문석 상임위원

- 한꺼번에….

○ 이경재 위원장

- 예.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안내해 주십시오.

(의견진술인 입장) (의견청취 부분 비공개)

【 11시 18분 속개 】

○ 이경재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재허가 관련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OBS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일단 백성학 죄다액출자자의 의견을 들었고, 심사위원들의 신랄한 추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죄다액출자자로서는 “앞으로 영업수지도 괜찮을 것이다, 적자도 줄여갈 것이다, 방송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하면 오너가 모든 것을 채우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각서나 기타의 추가되는 행정청으로서 신뢰할만한 말만이 아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서 OBS는 의결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양문석 위원이 제기하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방송사 전주, 청주, 광주의 사장 임기 1년은 재허가 ‘이행조건’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도 “다른 이사, 감사는 전부 2년, 3년 임기를 주면서 사장만 1년만 명시한다는 것은 방송보다는 영업을 해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재허가 조건으로 규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심사위원만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권고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행조건으로 권고하는 것이, 방송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통위의 행정책임으로서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사장 임기는 문면상으로는 임기를 정할 필요 없이 “이사, 감사, 사장 등의 임기를 사회 상규에 맞게 제조정하라”, 이런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38개 방송사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오랜 기간 동안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김충식 부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부위원장께서 정리하신 대로 대표자 임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일단 사업자들 간에 재허가 기간을 차별화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4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지금 OBS의 경우가 문제됐었는데,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지표명을 말로는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증한 문서를 받는 것을,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의결하기 전까지 그것을 받도록 해서, 그러니까 금년 12월 말까지는 되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라든지 이렇게 그 때까지 받아서 그것이 확인되면 그다음에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가야 제대로 된 담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죄다액출자자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증자 의향서, 비상시 재원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계획 및 투자의향서 등 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보고 다시 재허가 거부냐,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재허가나라는 탈락과 구제의 선상에서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아까 사장 임기와 관련해서 권고는 하되, 조건부라면 사장의 임기 여부를 어디다 박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조항이 있는 것인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서 방송전문경영인 사장의 임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그냥 그대로 재허가 조건에 옮겨 놓으면 법적인 난점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것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니까 등급이 재허가 조건이 큰 등급이고, 지금 권고는 약화된 등급인데 약화된 등급에서 조건부 등급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법적으로 별 문제 없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의 정관에 그 부분이 명시되도록 해서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인사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경영인과 소유주의 분리라는 원칙이 있지만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중간에 인사교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 김충식 부위원장

- 바꿔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 1년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장 임기를 2년으로 바꾸더라도 무능하면 6개월, 1년, 1년 6개월에 항상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율로 됩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망신 주듯이 ‘사장 너만 1년 임기로 해라’ 이렇게 정관에 해 놓는 것은 방송에 대한 모멸….

○ 이경재 위원장

-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정관을 개정하라는 것인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정종기 국장, 다시 한 번 조치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의결주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재허가 대상 방송사 중에서 OBS를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하되, 허가 유효기간은 심사평가 점수에 따라 700점 이상인 KBS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그리고 700점 미만 650점 이상인 (주)강릉MBC 등 26개사에 대해서 3년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불임>에 저희들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는데 그중에서 (주)광주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의 대표이사 임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수정·조정해서 그 부분을 이행하고 우리한테 그것을 제출하도록 권고를 내린 것을 조건으로 강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시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OBS 문제인데….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리고 OBS 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BS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함에 따라서 재허가 의결을 오늘은 보류하시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 등을 다시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OBS는 금년 말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20일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12월 20일까지 주요주주의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 계획과 최다액출자의 투자 재원 관련 계획 및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투자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의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20일에 계획을 접수하고 나서 내부 재심사를 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연내로는 재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 일정을 잘 짜셔야 할 것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방금 정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는 해외 출장 건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이 5건을 다 사전검토를 했고 또 사무국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건 전부 다 원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리를 뜰까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경재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렇게 재허가가 의결됨으로써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지상파방송 재허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허가 결과에 따른 조건과 권고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한 재허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OBS경인TV(주) (2013-46-210)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라>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주)OBS경인TV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에 의거 (주)OBS경인TV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인데, 이는 지난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주)OBS경인TV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 보류함에 따라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일반현황과 재허가 심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OBS경인TV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광고매출은 매년 약 20억 원씩 증가하고, 인력운영 효율화 등 비용감소를 통해 '14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14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보유액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내년 말 최소 87억 원을 보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증자는 '13년 영업손실이 '12년 대비해서 161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해서 경영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14년도에는 50억 원을 증자할 계획이고, 3월 말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하고, 5월 초에 주금납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증자추진 의사록과 추진일정, 주요주주 투자의향서, 최다액출자자 이행각서 및 이사회 결의서 등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14년도 흑자 전환 등 경영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다액출자자의 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15년에서 '16년에 걸쳐 약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추가 증가할 계획임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콘텐츠 제작비 규모는 '14년도 312억 원에 대비해서 다소 축소하여 내년도에는 약 296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동제작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향후 매출증대와 연동하여 수익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계획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다액출자자(백성학 회장)의 국회위증·무고 관련 대법원 유죄판결은 '07년 허가당시 제출한 간접혐의 관련 이행각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며, 사옥은 '17년 6월경 인천 계양구로 이전할 계획임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전문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OBS가 지난 12월 9일 재허가 의결 보유 이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은 이전에 비해서 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OBS가 '13년도 경영실적 개선을 전제로 해서 '10년도 재허가 조건 등에 따라 이행해야 할 증자규모, 시기 등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50억 원 증자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에 추가 증자 시기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켜

이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광고매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감축이 오히려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현금 유동성과 최소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등을 반드시 확보토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OBS와 최다액출자자의 방송사업 의지 및 시청권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허가신청서, 추가로 제출한 경영계획,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각서 및 의견청취 시 약속한 사항 등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조건을 부과하고, 지난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공통조건 및 권고사항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전의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건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내년 7월 말에는 '14년도 상반기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보유 실적을 점검한 후에 8월 말에는 추가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붙임 1> 재허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재허가 시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중에 '14년도 상반기 증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실적을 증자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 그리고 '10년도 재허가 조건과 '12년도 시정명령 시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고려해서 향후 재무상황 등에 따른 추가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14년 8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할 것,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15년부터 적정 현금보유액을 '13년 재허가 시 제출한 '14년 말 현금보유액, 약 87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13년도 제작투자비 311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상기 조건 이외에 '13년도 재허가 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콘텐츠 강화계획, 사옥 이전 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시에 제출한 증자계획, 이행각서 내용과 의견청취 시 약속한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그리고 최다액출자자는 당사자 관련 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하여 방송사업자로서 사회적 신뢰와 공적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등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신 민영TV 방송사업자에 적용한 공통적인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이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주)OBS경인TV에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전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출된 추가 답변서에는 백성학 회장의 의사가 담겨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2014년 상반기에 내기로 한 50억 원의 출자액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합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주요주주, 4대주주까지 포함해서 총 50억 원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바 있고, 그 부분은 투자비율에 따라서 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주총 때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보통 일반 건물분양에서도 의향서라는 것은 법률적인 기속(羈束)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시로 가짜 도장으로 찍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문제는 지상파 OBS가 제출한 자료에도 도저히 꿈에 불과한 장밋빛 망상을, 예컨데 KBS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또 코바코가 결합판매비율을 OBS만 이렇게 따뜻하게 해 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 것도 문제이고, 그런 것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무참히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지상파 영업추이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50억 원, '16년에 50억 원 땔 사람은 냉정한 사업가들이지 않겠습니까? 수지가 맞지 않으면 투자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히 조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무국도 또 방통위도 예의주시해야 하고, 특히 OBS의 경우에 지금까지 약속 위반의 상습성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재허가에 대해서도 최다액출자자를 다시 불러서 예외적으로 청문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음을 사무국이 명심해서 예의주시하고, 그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헛된 공약을 믿고 방통위가 이상한 행정을 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OBS가 이행해야 할 사항 등을 저희들이 재허가 조건 안에서 적시했습니다만 그 시기에 따라서 실적 등을 저희들이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때그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김대희 상임위원

- 투자계획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해 온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1차적으로 50억 원을 증자하고 그다음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라고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말에 상황을 점검해서 이것이 이행여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까지 조건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무엇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일단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역시 불이행하면 그에 따른 방송법상의 제재조치까지 가능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일정한 시정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방송평가에도 접수로 반영이 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평가에 반영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내년도 상반기에 50억 원 증자계획은 '14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내년 상반기….

○ 이경재 위원장

- 상반기만의 50억 원이 아니고….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해서 주금납입을 5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것이 상반기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50억 원인데 상반기까지 한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계획서 온 것을 대충 보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지, 콘텐츠에 주력해서 그쪽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재허가 조건에는 하여튼 작년도 수준의, 금년도 수준 실적 이상으로 프로그램 제작투자비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는데, OBS가 시청자 대역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또 번호도 좋기 때문에 콘텐츠만 잘하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현상유지를 위해 적자를 안 보겠다,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현상유지는 되지만, 그러나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것은 곧 쓰러지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콘텐츠에 총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시청률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아지고, 다만 방송 개국 초기에 과다 투자했던 부분들이 계속 감소하면서 금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1억 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투자액은 확보토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상황이 좋아지면 보다 더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여기에 요청한 것들 가만히 보면 전부 KBS 수신료가 올라가면 또는 중간광고가 되면 또는 광고공사 미디어웹 쪽에서 결합판매비율을 높여주면,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의존하고 정부가 투자해도 내용이 부실해서 방송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주지시켜서, 하여튼 콘텐츠 제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자구노력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OBS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송들도, 지역방송들도 자꾸 무엇을 들려 달라, 정부지원을 들려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늘리면 스스로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을 모든 방송사에게 알려주는 측면에서도 그것을 강조해 주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X.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3년 5월 27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
지상파방송정책과 김성환 사무관(☎2110-1421) openkey@kcc.go.kr

2013. 5. 27.(월)

방통위, 2013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 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방송시장 상생협력 등 중점 심사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13년 12월 말에 방송국 허가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는 지상파방송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리 증진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서비스 다양화, 기술개발 투자 등 지상파방송의 미래 대응 전략과 방송업계와의 상생방안을 평가기준에 반영·평가함으로써 중소방송 및 타 매체와의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수를 증원(9인 → 13인)하고 필요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확대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여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및 중점 심사기준을 반영해 구성하되, 공·민영/종합·전문편성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차별화, 방송평가*와의 중복 평가요소 개선 등을 통해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평가로써 매년 1년 단위로 평가하며, 재허가 심사시 방송평가 점수 40% 반영(총 1,000점 중 400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재허가 제도가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금번 재허가 심사가 방송통신융합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1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요약

< 불 임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요약

□ 재허가 대상

- o 2013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 총 38개사, 262개 방송국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황>

구 분	방송사업자
TV·라디오 (30개사)	·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18개 지역MBC, 9개 지역민방
TV (1개사)	· (주)OBS경인TV
라디오 (7개사)	·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기독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주)경기방송, (주)YTN라디오

□ 심사위원회 구성

- o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 분야(2)	관련학과 교수·종사자, 회계사
	기술 분야(2)	관련학과 교수·종사자 또는 연구원
	시청자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항목 및 배점

- o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점
4. 경영의 적정성	50점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점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85점
8.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점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점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계	1,000점

□ 재허가 여부 결정

- o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추진계획

- o 2013년 5월말 재허가 신청 공고
- o 2013년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 o 2013년 7월~8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미래부) 등
- o 2013년 9월~10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o 2013년 11월중 재허가 의결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보도자료

2013. 8. 5.(월)

2013년 8월 5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
지상파방송정책과 김성환 사무관(☎2110-1421) openkey@kcc.go.kr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를 위한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 2013. 8. 5(월) ~ 8. 30(금), 4주간 ◆

- 의견청취 고지방법 다양화 및 방송사 고지 실적 심사평가 반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013년 12월 말에 방송국 허가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위해 8월 5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4주간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시청자 의견청취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 절차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난 5월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기존의 관보·방통위 홈페이지·재허가 대상 방송국 등을 통한 고지 방법을

개선하여 방송사·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고지 실적(1일 2회이상 TV·라디오 고지)을 재허가 심사평가에 반영하여 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질적 시청자 의견청취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시청자 의견청취 내용은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방송 프로그램, 방송국 운영,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제출된 시청자의 의견을 재허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시청자들이 평소 방송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 시청자 의견청취 일정 및 의견제출 방법

2013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를 위해 시청자(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 시청자(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의견이 더 나은 방송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심사란?

◆ KBS, MBC 등 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기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고,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 12월에는 TV와 라디오 방송국 대부분의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국의 방송사항 전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재허가 대상 : 38개사 262개 방송국

- KBS, MBC, SBS, 지역MBC(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충청·청주·제주·울산·경남·목포·여수·안동·원주·충주·삼척·포항·강릉), 지역민방(KNN·대구·광주·대전·울산·전주·청주·G1·제주), OBS경인TV, 경기방송,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YTN라디오

시청자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 의견제출 기간(4주) : 2013. 8. 5(월) ~ 8. 30(금)

◆ 의견제출 내용

- o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o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o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경영,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o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의견제출 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o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o 팩 스 : 02-2110-0136
- o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2013. 12. 9.(월)

보도자료

2013년 12월 9일(월) 14:3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2110-1420)
김성환 사무관(☎2110-1421) openkey@kcc.go.kr

방통위,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 총 38개 대상 사업자 중 KBS, MBC, SBS, KNN, MBC경남 등 8개사 4년 강릉MBC, 광주방송, 극동방송 등 29개사 3년으로 재허가
- OBS경인TV,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경영 정상화 계획 및 실현의지 부족 등으로 재허가 의결 보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월 9일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KBS, MBC, SBS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재허가하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경인TV는 의결을 보류하였다.

OBS경인TV는 '07년 12월 개국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자기자본이 잠식(자본잠식률 '09년 53%→'13년 95%)되는 등 경영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오늘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BS경인TV가 의견청취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최다액출자자의 추가적인 투자·지원 등에 관한 이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다.

금번 심사는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리 증진 등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KBS는 방송법령에 따른 공적책임, 민영방송은 경영의 투명성, 지역방송은 경영 합리화와 지역성 구현,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고 과거 허가시 부여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실적,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수·미흡 평가사업자에 대해 조건과 권고 사항을 차별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 유지(지역방송·KBS지역국), 편성규약 공표 및 이행 강화(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및 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 투명성 확보(민영방송)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자율심의 강화, 장애인 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시청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정보보호 대책 수립,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특히 KBS·MBC·SBS에 대해서는 방송산업 발전 및 방송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중소방송 등과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송사업자별 개별 조건은 KBS는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항후 적자예산 편성, 인건비 비중 기증 등 KBS 자구 노력 부족),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MBC 본사의 지역MBC 이사 겸직 강화에 따른 독자적인 경영 저해 등), SBS는 사회환원 조건 유지(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 출연)와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기준 강화(지주회사 전환 이후 SBS 콘텐츠 관련 수익의 계열회사 이전) 등을 부과하였다.

지역MBC 중 안동·제주·청주·충주MBC는 경영 효율성 제고, 지역민방 중 울산·전주·청주·G1은 위험자산 투자에 따른 손실 관련 내부유보금 운영 기준 마련, 광주·전주·청주방송은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임기 개선 방안 마련, 불교·원음방송은 기부금 중심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조건을 부과하였다.

개별 권고사항으로는 지역MBC·민영방송은 과도한 배당 지양, 지역 민방은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등,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법령 준수 등을 부과하였다.

특히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의 매출 점유율, 영업 이익률, 광고매출 및 시청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과 매체간 경쟁은 광고매출 감소와 기타 사업 매출 증가 등 지상파의 매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역방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악화에 따라 수익 다변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사가 비방송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재허가시 제출한 재정운영 등 사업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방송제작 등 공적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요소 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최대 허가유효기간(5년) 부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건의하였다.

또한,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KBS, EBS 등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유효기간 세분화 (1~5년), 조건부 재허가시 임시허가 부여, 재허가 거부시 방송시설 양도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년도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14년도 주요 업무과제에 반영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끝.

〈 불 임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 재허가 :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

평가점수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
<u>700점 이상</u> 8개사 136개 방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 (주)대전MBC, (주)부산MBC, (주)MBC경남 ○ (주)대전방송, (주)KNN 	4년
<u>650점 이상</u> ~ <u>700점 미만</u> 29개사 125개 방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강릉MBC, (주)광주MBC, (주)대구MBC, (주)목포MBC, (주)삼척MBC, (주)안동MBC, (주)여수MBC, (주)울산MBC, (주)원주MBC, (주)전주MBC, (주)제주MBC, (주)청주MBC, (주)춘천MBC, (주)충주MBC, (주)포항MBC ○ (주)광주방송, (주)대구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제주방송, (주)청주방송, (주)G1 ○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평화방송 ○ (주)경기방송, (주)YTN라디오 	3년

□ 의결보류 : (주)OBS경인TV

-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OBS경인TV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함에 따라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주)OBS경인TV는 2013년 12월 20일까지 ①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②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 지원 관련 계획 및 이행각서, ③ 기타 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3.12.27.(금)

보도자료

2013년 12월 27일(금) 14: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2110-1420)
김은수 사무관(☎2110-1423) kss7004@kcc.go.kr

방통위, OBS경인TV(주) 조건부 재허가 의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방송사업 운영을 위해 증자 이행, 적정현금 보유, 최소 제작비 투자 등 조건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월 27일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주)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제43차 회의('13.12.9)에서 재허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주)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데에 따른 것이다.

OBS경인TV(주)가 12월 9일 의견청취 이후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있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비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하여 OBS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요주주의 투자 의향서, 최다액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14년 상반기 및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의견, OBS와 최다액출자자의 방송사업 의지 및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BS경인TV(주)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14년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¹⁾,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현금 보유액²⁾ 유지, '13년도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³⁾ 투자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 1) '14년 상반기 50억원, '14년 흑자 전환 등 경영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5년·'16년 각 50억원 추가 증자, 2) '14년말 기준 최소 87억원, 3) '13년 기준 311억원

또한, 최다액출자자(주영안모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OBS경인TV(주)에 부과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향후 OBS경인TV(주)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부록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 차

I. 재허가 계획(개요)	1
1.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2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2
3. 재허가 여부 결정 및 방송국 허가	2
4. 추진일정	3
5. 유의사항	3
II. 재허가 심사	4
1. 심사 기본 방향	4
2. 심사절차	5
3. 심사위원회 구성	6
4. 심사항목 및 배점	6
III.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 · 제출요령	7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7
2. 작성 및 제출요령	9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10
IV.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1

I. 재허가 개요

1.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 o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허가 받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전파법시행령 제27조제2호다목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하여는 본 재허가 계획과 별개로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야 함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 o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2013. 7. 1. 月)

-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 재허가신청서는 방송사업자별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성

- o 제출처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 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o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 담당(02-2110-1421, tvradio@kcc.go.kr)

3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4 추진 일정

- 2013년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 2013년 7월~8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미래부) 등
 -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은 시청자 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 2013년 9월~10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3년 11월중 재허가 의결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 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II. 재허가 심사

1. 심사 기본 방향

□ 방송의 공익성 · 공적책임 제고 및 시청자 권리 증진

- 방송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 운영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심사시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실현 여부 중점 심사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실적 등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심사 평가에 반영

□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및 절차 합리화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의 대응 및 상생방안을 평가 기준에 반영 · 평가함으로써 심사기준의 적시성 확보
-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수 증원, 평가단위 개선 등 심사절차 합리화

□ 실질적 심사 강화를 통한 재허가 제도 실효성 확보

-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 등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제출자료 검증 등 실질심사 강화
- 사업계획 실현 능력 및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 · 최대주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를 실시, 심사평가에 반영

2. 심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은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방송을 통해 공지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 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3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 분야(2)	관련학과 교수·종사자, 회계사
	기술 분야(2)	관련학과 교수·종사자 또는 연구원
	시청자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4 심사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15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점
4. 경영의 적정성	50점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점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85점
8.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점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점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회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계	1,000점

- ①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필요시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② 재허가 조건 등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III.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 요령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등, 첨부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허가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 ① 방송국 재허가신청서
 - ② 재허가대상 방송국 목록
 - ③ 서약서
 - ④ 일반현황
 - ⑤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⑥ 방송국 허가증 사본
 - ⑦ 방송국 허가증 사본
 - ⑧ 주간기본편성표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4. 첨부서류
5.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6. 요약문

※ 6.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제출부수

○ 최초 접수(2013. 7. 1.) : 원본 1부, 사본 2부, CD 1개

○ 보정 후 접수 : 원본 보정 1부, 사본 18부, CD 2개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제출 부수 현황>

구분	서류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7.1)	1. 신청공문	1	-	-	-
	2.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서	1	2	1	
	3. 무선설비 개요서, 공사설계서 등	1	2	1	
	4. 첨부서류	1	1	1	
	5.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보정후 재접수시	1. 보정제출 공문	1	-	-	-
	2.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서	1	18	2	
	3. 무선설비 개요서, 공사설계서 등	1	18	2	
	4. 첨부서류	1	10	2	
	5.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추후 통보시	6. 요약문	1	18	2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2.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서 작성관련 첨부제출로 제출 해야하는 자료

○ 별도제출자료

- 2010년, 2011년, 2012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방송국 허가증 등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 신청서 보정은 제출서류 구비여부, 신청서 작성지침 준수 등에 한함

2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면
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
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결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연주소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
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 첨부 재허가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방송국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 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재허가 관련 운영 실적 : 2011. 1. 1 ~ 2013. 5. 31
 - ※ 일부 자료의 경우, 2013. 1. 1 ~ 2013. 5. 31
 - ※ 2010년 이후 허가받은 방송국은 개국 이후 ~ 2013. 5. 31
 - 사업계획 : 2014. 1. 1 ~ 2018. 12. 31
- 작성 시, 원칙적으로 방송국별(TV, AM, 표준FM 등)로 구분 · 작성하되, 구분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해 통합 작성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현황

구분	담당자
재허가 총괄 및 한국방송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환 사무관(2110-1421) ○ 나상철 주무관(2110-1422)
(주)SBS,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기독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주)경기방송, (주)YTN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광용 사무관(2110-1424) ○ 김은비 주무관(2110-1425)
(주)문화방송, 18개 지역M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상걸 사무관(2110-1426)
(주)OBS경인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아미 사무관(2110-1423)
9개 지역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종민 주무관(2110-1427)

- 재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시 각 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담당자를 통해서 일괄 문의

IV.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 지침

2.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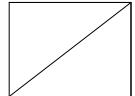
- ① 방송국 재허가신청서
- ② 재허가대상 방송국 목록
- ③ 서약서
- ④ 일반현황
- ⑤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⑥ 방송국 허가증 사본
- ⑦ 방송국 허가증 사본
- ⑧ 주간기본편성표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4. 첨부서류

5.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재허가신청서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 본

2013. 6.

로고 (주)○○방송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I. 재허가 신청서 0

II.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0

III. 서약서 0

IV. 일반 현황 0

V.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0

VI. 방송국 허가증 사본 0

VII. 주간기본편성표 0

I. 재허가 신청서

방송국 재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앞 쪽) 9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E-mail:	전화: 팩스:
허가사항	방송국의 명칭 (무선국종별)		방송사항 (사업종류)
	허가번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방송구역		
	기타 허가의 주요내용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건적	역무제공내용	수신자 불만처리

「방송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전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재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사업 운영실적서(※ 방송보조국은 제외) 2부. 2.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별지 제 20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제외) 1부. 5. 시설설치계획서(※ 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외)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1. 허가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I . 방송국재허가신청서

* 재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허가사항

* 사업종류 : 지상파방송사업으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허가받은 방송국의 매체를 기재(TV, FM, 표준FM, AM, 단파)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첨”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허가사항의 해당 내용을 기재

3.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V.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4.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V.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1

재허가 신청 현황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AM	표준FM	FM	단파	소계	

※ 허가받은 방송국의 유형에 따라, 해당란에 숫자를 기재

2

재허가 대상 방송국**II.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허가 번호	허가 일자	허가 만료일	방송국 명칭	매체	소재지		방송 사항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연주소	송신소		일원	일부		

※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소재지는 '송신소(방송국)'와 '연주소'로 구분하여 해당 주소지를 기재

※ 매체 : '1. 재허가 신청 현황'에서 제시한 매체구분 유형을 기재

예) TV, AM, FM, 표준FM, 단파 등

3 재허가 대상 방송보조국

1. 현황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AM	표준FM	FM	단파	소계	

2. 방송보조국 세부내역

허가 번호	허가 일자	허가 만료일	방송국 명칭	매체	소재지	방송사항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일원	일부		

* 방송보조국이 많은 경우, 주요 방송보조국만 작성하고 첨부로 제출 가능

4 2010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구분	유형	주요내용
공통	조건	
○○방송국	권고	

* 방송국 허가증 부관사항에 기재된 조건 및 2010년도 재허가시 통보한 권고사항을 기재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
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재허가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6월 일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

※ 방송사(방송국)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IV. 일반현황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혁

※ 방송국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방송국 허가현황

사업자명	매체 구분											
	방송국						방송보조국					합계
	TV	FM	표준 FM	AM	단파	소계	TV 중계	FM 중계	표준 FM 중계	AM 중계	소계	

※ 허가받은 모든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현황을 작성

구분	세부 내역					
방송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억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법인대표자				... ~ ...		
편성책임자				-		
임원				... ~ ...		
				... ~ ...		
				... ~ ...		
				... ~ ...		
				... ~ ...		
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 표에 맞게 해당내용을 작성하되, 주주현황은 5대 주주까지 기재

V.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V. 지상파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은 그 내용이 특정 방송국에만 해당하거나 또는 제외되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심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1**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이행실적('11~'13)****1. 공적책임 등 이행실적 현황(2011. 1. 1 ~ 2013. 5. 31)****가. 개요**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나.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공적책임 등 강화 계획 및 이행실적

2010년도 공적책임 등 강화 계획

* 2010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공익성 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기타 방송의 공적책임 등 제고 실적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관련한 방송의 공적책임 등 제고실적 작성(위. 1의 작성사항 제외)

*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4조(업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작성

3. 편성규약 제정 및 공표 현황(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방송사업자)

공적책임 등 이행실적

편성규약 제정일자

편성규약 주요 내용

편성규약 공표 방법 및 공표 현황

편성규약 내용에 따른 주요 이행사항

* 편성규약 전문 : 별첨 제출

4. 자체심의제도 운영 현황

자체심의기구 및 운영 현황(조직, 인력, 자체심의절차 및 방법 등 포함)

※ 자체심의 조직, 인원, 심의절차 등 구체적으로 작성

자체심의현황(2013. 1. 1. ~ 2013. 5. 30)

방송국명	전체 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건수 (비율)	전체 심의 건수		사전 심의 건수 (비율)	당일 심의 건수 (비율)	사후 심의 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 자체심의 실적(2013. 1. 1. ~ 2013. 5. 30) : 별첨 제출

- 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 작성

※ 자체심의 규정 : 별첨 제출

2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실현 계획('14~'18)

기본방향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관련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4조(업무)에 따른 이행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실현계획은 2014. 1. 1. ~ 2018. 12. 31.

주요 추진 계획

3

편성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등 이행실적('11~'13)

1. 방송 편성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등 주요 실적(2011. 1. 1 ~ 2013. 5. 31)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기본 방향

※ 2010년 재허가 당시 제출한 계획에 맞게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개요

(단위 : 분, %)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			%			
합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주요 이행실적

※ 편성실적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 주요 이행실적(추진년도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

□ 장애인 방송 편성 기본 방향

□ 장애인 방송 편성 현황

(단위 : 분, %)

방송국명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화방송	수화방송	(%)	(%)	%	(%)	(%)	%	(%)	
	자막방송	(%)	(%)	(%)	(%)	(%)	(%)	(%)	
	화면해설방송	(%)	(%)	(%)	(%)	(%)	(%)	(%)	
	전체방송시간	(%)	(%)	(%)	(%)	(%)	(%)	(%)	

□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편성실적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4. 재난방송 편성 실적

□ 재난방송 편성 기본 방향

□ 재난방송 실시 현황

(단위 : 분, %)

방송국명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재난방송	재난방송	(%)	(%)	%	(%)	(%)	%	(%)	
	전체방송시간	(%)	(%)	(%)	(%)	(%)	(%)	(%)	

□ 재난방송 프로그램 편성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편성실적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 재난방송 매뉴얼 : 별첨 제출

5.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기본 방향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현황

방송국명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	(%)	%	(%)	(%)	%	(%)	
	전체 방송시간	(%)	(%)		(%)	(%)		(%)	

(단위 : 분, %)

6. 노인·다문화 등 프로그램 편성 실적

노인·다문화 등 편성 기본 방향

노인 관련 프로그램 편성 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편성실적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편성실적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편성 실적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방송시간 합계					

* 편성실적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7. 각종 수상실적(2013. 1. 1 ~ 2013. 5. 31)

순번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비고

※ 지역방송국의 경우 본사 프로그램 및 제휴사의 Relay 프로그램 제외

4

편성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등 실현계획('11~'13)

1. 기본방향

2. 주요 추진 내역

3. 주요 프로그램 제작 계획

1**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11~'13)****1. 방송 편성 계획 이행실적 현황(2011.1.1 ~ 2013.5.31)****가. 개요**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 2010년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편성의 기본방향 내용과 구체적 편성내용(이행결과)을
기재

나.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 및 이행실적

2010년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

2. 방송분야별 · 제작주체별 편성실적 및 계획

가.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 방송시간

방송국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나.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제작 방송시간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2010년도 재허가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계획	이행실적		비고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 2010년 이후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명과 그 프로그램의 방송일시, 기획 의도 및 개요를 기재

방송국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다. 분야별 방송비율

① 종합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보도 등)

방송국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주된방송 분야명()	시간(분)									
	비율(%)									
() 분야	시간(분)									
	비율(%)									
() 분야	시간(분)									
	비율(%)									
전체방송	시간(분)									
	비율(%)									

※ 지역방송국의 경우, 본사 또는 제휴사의 프로그램 Relay 편성된 프로그램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외부구입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 · 교양 · 오락의 편성시간을 기입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라. 지역방송국 자체제작방송의 분야별 방송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있는 지역방송국만 작성
(본사 프로그램 및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Relay하는 지역방송국)

① 종합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자체 제작 방송	시간(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보도 등)

방송국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주된방송 분야명()	시간(분)									
	비율(%)									
() 분야	시간(분)									
	비율(%)									
() 분야	시간(분)									
	비율(%)									
전체 자체 제작 방송	시간(분)									
	비율(%)									

※ 지역방송국에서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의 분야별 방송비율을 작성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마.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실적

(단위 : %, 천 원)

방송국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비율 계획	비율 실적 (증감) (증감)	비율 계획	비율 실적 (증감) (증감)	비율 계획	비율 실적 (증감) (증감)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외주 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있는 지역방송국(본사 프로그램 및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Relay하는 지역방송국)은 본사 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과 타 항목의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 비율과 비용은 연간기준이며, 비용은 '3. 경영실적 및 계획, 3. 분야별 투자실적' 중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실적' 금액과 일치해야 함

2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편성 계획('14~'18)

1.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

□ 기본방향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허가받은 방송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 매체별 편성 기본방향

※ 허가받은 매체의 특성(종합편성, 전문편성) 등을 고려한 방송의 다양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 등을 작성

2.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

방송편성일자	프로그램명	구분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을 양식에 맞게 기재

3. 방송분야별 · 제작주체별 편성계획

가. 자체편성 방송비율

방송국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방송시간(분)					
	자체편성 프로그램 편성비율(%)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편성 방송시간과 비율을 작성

나.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제작 방송시간

방송국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방송시간(분)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분)(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전체방송시간 및 자체제작 방송시간과 비율을 작성

다. 분야별 방송비율

① 종합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	시간(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보도 등)

방송국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된방송 분야名()	시간(분)					
	비율(%)					
() 분야	시간(분)					
	비율(%)					
() 분야	시간(분)					
	비율(%)					
전체방송	시간(분)					
	비율(%)					

※ 지역방송국의 경우, 본사 또는 제휴사의 프로그램 Relay 편성된 프로그램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외부구입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교양·오락의 편성시간을 기입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라. 지역방송국 자체제작방송의 분야별 방송계획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있는 지역방송국만 작성

① 종합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자체 제작 방송	시간(분)					
	비율(%)					

② 전문편성(음악, 종교, 보도 등)

방송국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된방송 분야名()	시간(분)					
	비율(%)					
() 분야	시간(분)					
	비율(%)					
() 분야	시간(분)					
	비율(%)					
전체 자체 제작 방송	시간(분)					
	비율(%)					

※ 지역방송국에서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의 분야별(보도·교양·오락) 방송비율을 작성

※ 방송국의 방송사항에 따라 표(종합편성, 전문편성)에 맞게 작성

마.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

(단위 : %, 천원)

방송국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율	비용								
	본사(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										
	자체제작										
외주 제작	순수 외주										
	자회사 외주										
외부구입 프로그램	국내										
	국외										
	기타 프로그램										
	연간 총 전체방송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있는 지역방송국(본사 프로그램 및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Relay하는 지역방송국)은 본사 또는 제휴사 Relay 프로그램과 타 항목의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 비율과 비용은 연간기준이며, 비용은 '3. 경영실적 및 계획, 3. 분야별 투자계획' 중 '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금액과 일치해야 함

3. 경영실적 및 계획

1

경영계획 관련 이행 실적('11~'13)

다. 내부 조직도(2013.5.31. 기준)

조직도

1.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가. 직급별 인력구성 및 인건비 현황(2012.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임원	일반직					계약직					합계
						소계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나.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13. 5.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	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합계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등으로 구분

※ 지역방송국 조직이 있는 경우, 본사 및 지역국별로 작성

2.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및 이행실적

나.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조직운영·효율성 강화 계획 및 이행실적

가. 개요

2010년도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계획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

다. 인력 운영 실적 및 채용 현황

인력 운영 실적

(단위 : 명)

방송국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소 계						
	합계						

라. 계약직 및 파견직 운영 현황

계약직, 파견직 운영 방향

계약직, 파견직 운영 직종

계약직, 파견 직종의 정규직 전환 현황 등 기재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채용 현황

(단위 : 명)

방송국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원						
방송직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3. 분야별 투자실적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11~'12년계		2013년 5월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국명			%			%		
합 계								

※ 2013년의 경우 연간 계획을 작성하고, 실적은 5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나. 직원 교육 관련

□ 직원 교육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유형	2011년		2012년		계		2013년 5월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다. 연구개발 투자 관련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연구개발 총투자			%			%			%	

□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합 계				(%)

※ 방법은 「자체연구, 공동연구」 등으로 구분하고, 공동연구의 경우는 팔호()안에 관련기관을 기재

4.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계획대비 실적

가. 개요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경영 효율성·투명성 계획 및 이행실적

2010년도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계획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이행실적

- ※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방안 계획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소유·경영 분리방안, 경영진 구성절차 개선,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계획, 경영감시기구(경영평가단, 사외이사제 등)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이사회 운영 현황 등

이사회 등 현황

5. 2010년 재허가시 제출한 자금조달·운영계획 및 이행실적

가. 개요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이사회 운영 실적

이사회 등 내·외부 지적사항 및 주요 조치 실적

나. 2010년도 재허가 제출한 자금조달·운영 계획 및 이행실적

□ 2010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이행실적

2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의 경영 계획('14~'18)

1. 조직운영의 기본 방침 및 효율성 강화 방안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의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운영 기본방침과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2. 인력 운영계획

(단위 : 명)

방송국명	구분	2013년 5월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방송직	임원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파견직						
	기타						
	소 계						
합계							

※ 인력운영 규모를 양식에 맞게 기재

3.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채용계획(2014~2018)

(단위 : 명)

방송국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방송직	임원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계약직					
	기타					
	소 계					
합계						

4. 분야별 투자계획

가. 기본방향

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대 비증감 비율	금액	전년대 비증감 비율	
방송국명			%		%		%		%		%	
합계												

다. 직원 교육 관련

□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유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국내전문교육		%		%		%		%		%	
국내교양교육		%		%		%		%		%	
해외교육		%		%		%		%		%	
기타		%		%		%		%		%	
합 계		%		%		%		%		%	

□ 직원 교육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
				(%)
				(%)
				(%)
				(%)
				(%)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관련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연구개발 총투자		%		%		%		%		%	

□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
				(%)

5.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기본방향

6.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기본방향

세부 추진 계획

세부 추진 계획

7.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계획

기본방향

세부 추진 계획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구 分	2010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요약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재무비율	인건비					
	영업순익					
	당기순손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재무상태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화일 별도 제출

※ 손익계산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화일 별도 제출

※ 2010년, 2011년, 2012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최근 3년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2. 주주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동방송사 구성주주간 채무보증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대기업 해당 여부 (o, x)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주 식 수	지 분 율	피 보 증 사 명	보 증 일	보 증 액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국 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총계														

* 2013년 5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상장사인 경우, 1% 이상 주주만 작성)

- ①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 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 ②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대 구성주주 중 지분율 5% 이상 주주에게서는 <10. 기타 제출사항>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 및 ‘인감증명서’를 각 1 부씩 제출받아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을 확인해 기재한 후, 동 특수관계자 확인서를 ‘다. 주주현황’의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주주사에 붙임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 다만, 5대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함.
 - * 기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 ③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를 표기
- ④외국인지분비율(%) : 해당주주의 외국인지분비율(%)을 기재

3. 주주 변동내역(2011.1.1 ~ 2013.5.31)

(단위 : 백만원)

회차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5%이상 보유 주주의 변동 내역을 양식에 맞게 작성.

4.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5.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계획	실적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공적재원 (수신료, 기금 등)			%		%		%		%	
재송신매출액			%		%		%		%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액			%		%		%		%	
지상파광고 매출액			%		%		%		%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		%		%		%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		%		%		%	
협찬매출액			%		%		%		%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액			%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	
기타사업매출액			%		%		%		%	
총 계			%		%		%		%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 기준으로 함

나. 공적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		%		%	
합 계			%		%		%		%	

*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지원, 기타 등을 구분하여 기재

다. 재송신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		%		%	
합 계			%		%		%		%	

라.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		%		%	
합 계			%		%		%		%	

마. 지상파광고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		%		%	
합 계			%		%		%		%	

바. 지상파DMB광고매출액

아. 협찬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사. 방송채널사업광고매출액

자.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차.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카. 기타사업매출액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임대료			%		%		%		
			%		%		%		
			%		%		%		
합 계			%		%		%		

2

향후 재정 운영 계획('14~'18)

1. 추정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分	201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계액					
요약 순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재무비율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엑셀화일 별도 제출

2.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공적재원 (수신료, 기금 등)		%		%		%
재송신매출액		%		%		%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		%		%
지상파광고매출액		%		%		%
지상파DMB광고 매출액		%		%		%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		%		%
협찬매출액		%		%		%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액		%		%		%
기타방송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공적재원 (수신료, 기금 등)		%		%		%	
재송신매출액		%		%		%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		%		%	
지상파광고매출액		%		%		%	
지상파DMB광고 매출액		%		%		%	
방송채널사용사업 광고매출액		%		%		%	
협찬매출액							
방송프로그램판매 매출액							
기타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총 계							

나. 공적재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		%		%	
		%		%		%	
		%		%		%	
총 계							

다. 재송신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		%		%
합 계		%		%		%		%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		%		%	
합 계		%		%		%		%	

라.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		%		%
합 계		%		%		%		%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		%		%	
합 계		%		%		%		%	

마. 지상파광고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합 계		%		%		%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합 계		%		%		%	

바. 지상파DMB광고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합 계		%		%		%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합 계		%		%		%	

사. 방송채널사업광고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합 계		%		%		%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합 계		%		%		%	

아. 협찬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합 계		%		%		%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합 계		%		%		%	

자.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합 계		%		%		%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합 계		%		%		%	

차. 기타방송사업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합 계		%		%		%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합 계		%		%		%	

카. 기타사업매출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		%		%
		%		%		%
		%		%		%
합 계		%		%		%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		%		%	
		%		%		%	
		%		%		%	
합 계		%		%		%	

3

방송기술 관련 투자 실적('11~'13)

1. 방송기술 관련 투자 실적(2011. 1. 1 ~ 2013. 5. 31)

가. 개요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0년도 재허가 제출한 방송기술 투자 계획 및 이행실적

2010년도 방송기술 등 투자 계획

2. 방송기술 관련 투자 현황

가.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		%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송신관련 시설			%		%	
기타 시설			%		%	
합 계			%		%	

※ 양식에 맞게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을 작성한 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작성

나.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실적 중 주요 세부내역(2011~2012)

(단위:백만원)

방송기술 등 투자 이행실적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시설에 대한 주요 투자 세부내역을 작성(디지털전환 관련 투자내역은 비고란에 별도 표기)

3. 난시청 해소관련 실적

가. 난시청 현황

나. 난시청 관련 투자 및 해소 실적

다. 난시청 관련 주요 민원 현황

4. 디지털 전환 관련 이행 실적

5. 방송사고 주요 현황 및 방송사고대응 매뉴얼

가. 방송사고 현황

나. 방송사고 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 방송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 : 별첨 제출

6. 국산장비 사용 현황

7 네트워크 등 시스템 보안 강화 현황

8. 방송관련 신규기술 개발 실적

4

방송기술 관련 투자 계획('14~'18)

1. 방송기술 관련 투자 계획

□ 기본 방향

□ 세부투자 계획

2.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		%		%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
	송신관련 시설		%		%		%
	기타 시설		%		%		%
	합계		%		%		%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체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			%		%		%	
재허가대상 방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프로그램 제작관련 시설		%		%		%	
	송신관련 시설		%		%		%	
	기타 시설		%		%		%	
	합계		%		%		%	

3. 방송시설(재허가 대상)에 대한 투자계획 중 주요 세부내역(2014~2018) (단위:백만원)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비고

4. 난시청 해소 계획

가. 난시청 해소 주요 계획

나. 난시청 관련 민원 처리 계획

5. 국산장비 사용 계획

6. 방송관련 신규기술 개발 계획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나.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실적

 2010년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이행실적 현황(2011.1.1 ~ 2013.5.31)

가. 개요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이행실적

* 재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발전 지원계획 내용과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재허가시 제출한 계획 외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 민방 사회환원 실적, 방송프로그램 수출실적, 외국 공동제작 현황, 방송교류 협약 체결, 중소방송(지역방송, 유료방송, 기타 방송사업자 등)과의 상생 및 협력 실적 등

1. 기본방향**6. 시청자 권리보호 실적 및 계획****2. 세부 추진 계획**

※ 민방 사회환원 실적, 방송프로그램 수출실적, 외국 공동제작 현황, 방송교류 협약 체결, 중소방송(지역방송, 유료방송, 기타 방송사업자 등)과의 상생 및 협력 계획 등

1

시청자 권리보호 관련 이행실적(‘11~‘13)

1. 시청자 권리보호 등 이행실적 현황(2011.1.1 ~ 2013.5.31)

가. 개요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시청자 권리보호 계획 및 이행실적

2010년도 시청자 권리보호 계획

시청자 권리보호 이행실적

2. 시청자 민원 처리 현황

가. 시청자 민원처리 전담 부서 현황

나. 시청자 민원(불만)처리 절차

※ 시청자 불만처리 주체(담당부서 등), 처리절차 등 상세하게 기술

다.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합계				

※ 본사 · 지역국을 구분하여 작성

라.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구분	건수	비율(%)	기타	합계
2011년	건수			
	비율(%)			100%
2012년	건수			
	비율(%)			100%
2013년 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본사 · 지역국을 구분하여 작성

※ 연도별 시청자불만 상위 5대 사유의 건수 및 비율 기재

마.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구분	건수	비율(%)	기타	합계
2011년	건수			
	비율(%)			100%
2012년	건수			
	비율(%)			100%
2013년 5월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본사 · 지역국을 구분하여 작성

※ 연도별 시청자불만 미처리건 상위 5대 사유의 건수 · 비율 기재

바. 시청자 민원 주요 내역

※ 시청자 민원 주요내역의 경우, 3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현황

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2011.1.1 ~ 2013.5.31)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사업자의 경우에만 작성. 단, 전문편성의 경우 유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해당내용 작성 가능

가. 시청자위원회 운영 기본 방향

나.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다. 시청자위원회 제시 의견 반영 내역(2013.1.1 ~2013.5.31)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 2012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13년

라.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중 미반영 내역(2013.1.1 ~2013.5.31)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마. 시청자위원회 위원 명단

□ 2011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2.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계획

- o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청자 의견 공개 청취 관련 고지 계획(재허가대상 방송국, 홈페이지 등)

* 향후 고지 계획에 따른 고지 실적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3. 시청자 평가원 운영 현황

6. 시청자 의견수렴 관련 홈페이지 등 운영 현황

4.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기본방향

※ 시청자 권리실현 방안 및 실현 계획을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청자의 방송편성·제작 등 참여 보장 방안
- 시청자불만처리시스템 개선방안 등

7. 지역사회 발전

2. 세부 추진 계획

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11~'13)

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현황(2011.1.1 ~ 2013.5.31)

가. 개요

방송국명	'10년 재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0년도 재허가시 제출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및 이행실적

2010년도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계획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이행실적

2. 캠페인·행사·기부 등 주요 실적 현황

가. 개요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합 계	
	건수	금액	전년대 비증감 비율	건수	금액	전년대 비증감 비율	건수	금액	전년대 비증감 비율	건수	금액
기 부	기 부										
	행 사										
	캠페인										
	후 원										
	기 타										
총 계											

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 · 주관단체	지원 및 참여내용	지원금	비고
합 계							

3. 지역사회 발전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2011.1.1 ~ 2013.5.31)

□ 개요

(단위 : 분, %)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방송시간) (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재허가방송국명			%		%		
합 계							

□ 세부내역

구 分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방송국명					
방송국별 방송시간 합계					
총 방송시간 합계					

1. 기본방향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8.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2.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3. 세부 추진 계획**

1**2010년 재허가시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11~‘13)****1. 재허가 조건****가. 개요**

방송국명	2010년 재허가시 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0년도 재허가 조건**다. 이행실적****2. 권고사항****가. 개요**

방송국명	2010년 재허가시 권고사항(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2010년도 재허가 권고사항**다. 이행실적**

* 2010년도 허가·재허가 시 공통 권고사항·사업자별 권고사항 및 그 이행 여부 등을 기재

* 2010년도 재허가시 조건부 재허가 사업자의 경우, 위원회 지적사항과 사업자 이행 각서 제출내용 및 그 이행 내용, 이행 여부 등을 기재

2

지상파TV 방송시간 확대 관련 권리사항 이행실적(‘11~‘13)

1. 2005년 낮방송 확대 관련

□ 낮 시간대 편성 기본 방향

□ 낮 시간대 편성 정책 개발 및 주요 현황

□ 낮 시간대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1년	2012년
보도	시간(분)		
	비율(%)		
교양	시간(분)		
	비율(%)		
오락	시간(분)		
	비율(%)		
전체 낮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 평일 12:00~16:00 사이에 편성된 낮시간대 프로그램 시간 및 비율을 보도, 교양, 오락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재, 라디오 방송국 제외

□ 낮 시간대 장애인 시·청취 지원 프로그램 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1년	2012년
자막방송	시간(분)		
	비율(%)		
화면해설 방송	시간(분)		
	비율(%)		
수화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 낮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 평일 12:00~16:00 사이에 편성된 낮시간대 프로그램 시간 및 비율을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으로 구분하여 기재, 라디오 방송국 제외

□ 낮 시간대 재방송 이상 프로그램 편성

방송국명	분야	2011년	2012년
본방송	시간(분)		
	비율(%)		
재방송 이상	시간(분)		
	비율(%)		
전체 낮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 평일 12:00~16:00 사이에 편성된 낮시간대 프로그램 시간 및 비율을 본방(초방)과 재방송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라디오 방송국 제외

2. 2012년 방송시간 확대 권고사항 관련

방송시간 확대 현황

심야시간대 편성 기본 방향

심야시간대 편성 정책 개발 및 주요 현황

재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구분	유형	2012년	2013년 5월
전체 방송시간	재방송	분 (%)	분 (%)
	전체 방송시간	분	분
심야방송시간 (01:00~06:00)	재방송	분 (%)	분 (%)
	전체 심야 방송시간	분	분

* 2012년도의 경우, TV 방송시간 확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분야별 편성 현황

구분	유형	2012년	2013년 5월
전체 방송시간	보도	분 (%)	분 (%)
	교양	분 (%)	분 (%)
	오락	분 (%)	분 (%)
	합계	분 (100%)	분 (100%)
심야방송시간 (01:00~06:00)	보도	분 (%)	분 (%)
	교양	분 (%)	분 (%)
	오락	분 (%)	분 (%)
	합계	분 (100%)	분 (100%)

* 2012년도의 경우, TV 방송시간 확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19세 이상 프로그램 편성 현황

구분	유형	2012년	2013년 5월
전체 방송시간	19세 이상	분 (%)	분 (%)
	전체 방송시간	분	분
심야방송시간 (01:00~06:00)	19세 이상	분 (%)	분 (%)
	전체 심야 방송시간	분	분

* 2012년도의 경우, TV 방송시간 확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 장애인 방송 편성 현황

구분	유형	2012년	2013년 5월
전체 방송시간	자막	분 (%)	분 (%)
	화면해설	분 (%)	분 (%)
	수화	분 (%)	분 (%)
	전체 방송시간	분	분
심야방송시간 (01:00~06:00)	자막	분 (%)	분 (%)
	화면해설	분 (%)	분 (%)
	수화	분 (%)	분 (%)
	전체 방송시간	분	분

※ 2012년도의 경우, TV 방송시간 확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 심야시간대 편성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1회 방송(분)	프로그램 개요	분야	제작 형식	재방여부	19세 여부

※ 2012년도의 경우, TV 방송시간 확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11~‘13)

1. 대표자 변경 현황

성명	재직기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이사가 2인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직기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3.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자성명 및 관계	비고
성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재허가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방송국명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4

협찬 운영 현황('11~'13)

1. 협찬 운영 방향

2. 협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캠페인 협찬	(%)	(%)	(%)
행사 협찬	(%)	(%)	(%)
시상품 협찬	(%)	(%)	(%)
기타 협찬	(%)	(%)	(%)
협찬수입 총계	(%)	(%)	(%)
전체매출액			

* 재허가대상 방송국별로 작성

5

방송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분쟁 현황('11~'13)

1. 개요(2011.1.1 ~ 2013.5.31)

2. 주요 내용

6

자회사 및 관계회사 현황

□ 자회사 및 관계회사 현황(2013.5.31)

(단위 : 천원)

법인명	주요사업	지분율 (%)	콘텐츠 등 거래금액		비고
			2011년	2012년	

특수관계자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1. 특수관계자 현황(2013.5.31)

방송사업자명	특수관계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특수관계내용
			PP	계열회사
				30% 출자
				30% 출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9. 행정처분 현황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13.5.31)

방송사업자명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허가·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TV채널)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 '13.05.31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허가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시정명령(불이행), 심의제재, 행정처분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
할 것

1

시정명령(불이행) 현황('11~'13)

시정명령(불이행) 현황(2013. 1. 1 ~ 2013. 5. 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 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 · 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3

기타 행정처분 현황('11~'13)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 현황(2013. 1. 1 ~ 2013. 5. 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 고
	과태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 · 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2

심의제재 현황('11~'13)

심의제재 현황(2013. 1. 1 ~ 2013. 5. 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0조제0항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4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 현황('11~'13)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사례(2013. 1. 1 ~ 2013. 5. 31.)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 지상파방송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례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1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공표 자료

1. 재허가 대상 현황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AM	표준FM	FM	단파	소계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사업자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10. 기타 제출사항

3. 재허가 대상 방송국

방송사업자명	방송국 명칭	최초 허가일자	주요 방송구역	주요 방송내용	비고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ooo주식회사의 2013년 12월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운용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이 확인서의 내용에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어 방송법제8조(소유제한등)를 위반할 경우에

- ① 본인(법인)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② ooo주식회사의 운용방송국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허가기간의 6개월 단축,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법인)은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이 확인서 작성일까지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40%(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3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인(법인)과 ooo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방송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본인(법인)과 ooo주식회사 주주(첨부1)와의 2011년 1월 1월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의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13년 6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첨부 : 1. 주주현황(2013.5.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족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족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족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4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8.2.22, 2010.1.2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 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주주현황

(2013.5.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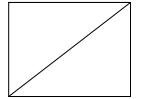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주식수(주)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VI. 방송국 허가증 사본

o 재허가 신청 방송국의 허가증 사본 첨부

재허가신청서 ②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시설설치계획서

VII. 주간기본편성표

- 재허가 대상이 되는 방송국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2013년 5월 31일 기준, A4 용지 규격

원 본

2013. 6.

로고 (주)○○방송

목 차

I .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0
II.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0
III.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0
IV. 시설설치계획서	0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1. 재허가 신청 현황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AM	표준FM	FM	단파	소계	

2. 재허가 대상 방송국

허가 번호	허가 일자	허가 만료일	방송국 명칭	매체	소재지		방송 사항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연주소	송신소		일원	일부		

I.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3. 재허가 대상 방송보조국

가. 현황

사업자명	TV	라디오					합계
		AM	표준FM	FM	단파	소계	

나. 방송보조국 세부내역

허가 번호	허가 일자	허가 만료일	방송국 명칭	매체	소재지	방송사항	방송구역		주파수	출력
							일원	일부		

II.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시설설치계획서

-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첨부문서 및 시설설치계획서의 경우 기존 허가·재허가시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이 있는 사업자에 한해 작성

- ※ 추후 기술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방송국 재허가)					
방송국명					
허가번호					
시설자명					
설치	송신소	영상)주: 예비: 음상)주: 예비:			
장소	연주소				
관한사항	방송구역				
	총가구수	가구	시청취가구수	가구 (%)	
경영사항	경영형태		구분	성명	대표자
	자본금액	억원	주된 출자자		
	직위	성명			
	임원				
	최근 3년간의 사업수지내역 (세부내역별첨)	구분	년	년	년
수입		억원	억원	억원	
지출		억원	억원	억원	
방송운영에 관한사항	방송사항 (부기서비스사항)				
	운용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주간편성표 별첨)	방송사항	1주간당 시간비율		
	타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송시간	공급국명	1주간당 시간		
방송시설에 관한사항	구 분	송신장치	수신장치	송신공중선	수신공중선
	형식(구성)				
	제조사명				
	제조연월				
최근 3년간 시설변경에 관한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참고사항	

III.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방송국)								
① 송 신 부	(1)송신방식							
	(2)장치구분							
	(3)정격출력		(4)실효복사전력					
	희망 또는 발사 가능 전파특성	(5)전파형식	(6)주파수	(7)주파수범위				
		(8)발진방식	(9)변조방식	(10)최고변조 주파수				
		(11)주파수변환 방식						
		(12)주파수편이역제장치						
	(13)공중선전력저하장치							
	종단부트랜지스터 (IC 또는 진공관)	(14)명칭	(15)개수	(16)비고				
	스튜리어스발사 제거장치	(17)방식	(18)제거대상 주파수	(19)삽입손실				
	송신장치제원	(20)제조자명	(21)형식 또는 명칭	(22)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② 수신부 (주·예비 장치)	(1)전파형식 및 주파수범위	(2)국부발진주파수와 중간주파수	(3)중간주파증폭부통과대 역폭 (-6dB점)					
	(4)제조자명	(5)형식 또는 명칭	(6)일련번호 및 제조연월일					
③ 송 신 공 중 선 설 계 등	공중선	(1)형식 및 구성	(2) 편파면	(3) 이득(dB)	(4) 지상고 (m)	(5) 해발고 (m)	(6)주복사각도 또는 판넬방향	
	(7) 전기적 틸트				(8) 방향별 틸트			
	급전선	(9)종별	(10)길이(m)	(11)손실(dB)	(12)기타	(13)비고		
	(14)전체손실(dB)							

④ 수신 공중 선계	공중선	(1)형식과구성	(2)편파면	(3)이득 (dB)	(4)지상고 (m)	(5)해발고 (m)	(6)지향각						
급전선		(7)종별		(8)길이(m)		(9)손실(dB)	(10)기타						
⑤ 연주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⑥ 조장 장치	(1)종류		(2)상용(대수)		(3)예비(대수)		(4)형식 또는 명칭						
⑦ 전원 설비	구분	(1)종류	(2)용량	(3)전압	(4)상수	(5)비고							
	연주소												
	송신소												
⑧ 접지 방식	(1)송신기	(2)접지저항											
	(3)안테나	(4)접지저항											
	(5)기타												
⑨ 공중 선주 및 급전 선주	구분	(1)종류	(2)높이	(3)기부 지상고	(4)공용하는 방송국	(5)주수							
	공중선주												
	급전선주												
⑩ 부속 설비	의사공중선	(1)종류		(2)용량		(3)개수							
⑪ 기타	자동경보장치 또는 자동감시장치	(4)경보를 받거나 감시하는 장소											
		(5)경보 또는 감시항목											
	자동제어장치(원격제어장치포함)	(6)제어장소											
(7)제어항목													
⑫첨부도면													
(1)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표시도				(2)부지내 시설 및 기기배치도									
(3)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공중선계 구성약도				(6)송신공중선 지향특성도									
(7)자동제어장치 및 자동감시장치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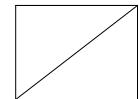
기재요령

1. 제①란 (1): 중파방송, 초단파방송 송신의 표준방식(모노포닉 또는 스테레오 포닉방송) 또는 TV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TV 음성디중방송) 등으로 기재합니다.
2. 제①란 (2): 송신기가 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 "예비" "영상" 또는 "음성"과 같이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 공사설계의 내용이 동일한 장치에 대하여 일괄하여 기재(제조번호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제①란 (3): 중파방송 및 단파방송의 경우에는 반송파전력을, 초단파방송의 경우에는 평균전력을, 디지털TV방송은 평균전력을 기재합니다.
4. 제①란 (4): 초단파방송 및 TV방송의 경우에는 출력, 이득, 손실을 고려한 전력을 기재합니다.
5. 제①란 (11): 방송파 직접 수신증계방식에 한하여 기재 합니다.
6. 제①란 (12): 주파수편이 억제장치의 명칭을 기재하되 송신기와 동일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장소를 함께 기재 합니다.
7. 제①란 (14), (15), (16), (20), (21), (22) 및 제②란 (4), (5), (6) :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8. 제②란: 다른 방송국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여 증폭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에 관하여 기재하고, (주장치, 예비장치)란에는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9. 제③란 (1) 내지 (7):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구분 기재합니다.
10. 제③란 (3): 상대이득 또는 절대이득을 기재합니다.(지향성공중선일 때에는 최대지향방향의 이득).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단소수직공중선(Short Vertical Antenna)을 기준으로 한 이득을 기재합니다.※ 단소수직공중선: 완전도체면상에 설치된 1/4파장보다도 매우 짧고 손실이 없는 접지 안테나
11. 제③란 (4) 및 (5): 공중선 복사체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기재. 다만, 표준방송의 경우에는 (4)에 복사체의 길이를 기재합니다.
예) 지상고: 지상에서 안테나 중심부까지의 높이 해발고: 해면에서 안테나 중심까지의 높이
12. 제③란 (6): 지향성공중선의 경우에는 지향성을 주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13. 제④란: 송신공중선계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4. 제⑤란: 레코드플레이어·테이프레코더·비디오레코더·스튜디어카메라·필름카메라·필름투사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5. 제⑥란: 제한증폭기·조정증폭기·전치증폭기·카메라제어장치·동기신호 발생장치·흔합증폭기·안정증폭기·스테레오 제네레이터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6. 제⑦란 (5): 전원설비를 다른 방송국과 공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명과 공용 한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17. 제⑧란: 라디얼스일 때에는 접지선수·길이 및 깊이를, 심굴접지일 때에는 면적·매수 및 깊이와 각각 접지저항을 기재합니다.
18. 제⑨란: 공중선주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19. 제⑨란 (2): 구축물(건물)의 높이를 제외한 안테나 전체높이 값을 기재합니다.
20. 제⑨란 (3): 기부지상고는 구축물(건물)의 높이를 포함한 높이를 기재합니다.
예) 건물+안테나
21. 제⑩란 (4), (5), (6), (7)란: 경보·감시 또는 제어하는 장소가 경보감시 또는 제어대상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22. 제⑯란: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속에 ○표를 합니다.
23. 제⑯란 (1): 5만분의 1지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 제⑯란 (2): 국사·부속사·공중선 등의 개요를 기재하고, 공중선부근의 인접무선국 및 전파장애시설물을 표시합니다.
25. 제⑯란 (3): 중계망의 구성과 방식을 기재합니다.
26. 제⑯란 (4): 각단의 용도, 진공관(반도체)의 명칭주파수 및 전원전압 등을 기재합니다.
허가신청시 제조자명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신고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27. 제⑯란 (5)
 - 공중선주 공중선공용장치 및 급전선공용장치를 포함하고, 공중선복사체의 형상 및 크기와 복수의 복사체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복사체에 공급되는 전력비 및 전류의 위상을 함께 기재합니다.
 - 공중선의 취부상황을 평면도(방위표시) 및 측면도로 작성합니다.
28. 제⑯란 (6): 수평면 및 수직면의 지향특성도를 각각 작성하고 1도 단위로 안테나 방사전력의 수직, 수평값을 제출합니다.

IV. 시설설치계획서

- 시설설치계획서 : 연주소 평면도, 연주소 설치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임차의 경우) 등 시설설치계획서

재허가신청서 ③



첨부서류

원본

2013. 6.

로고 (주)○○방송

목 차

1. 법인등기부 등본 0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0
3. 편성규약 전문 0
4. 자체심의 실적 0
5. 자체심의 규정 0
6.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0
7. 재무상태표 0
8. 손익계산서 0
9. 방송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 0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별도 제출 자료

1. 2010년·2011년·2012년 감사보고서 2부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화일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화일